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칙

Rule General Assembly, Rome, October 2003

제1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국제 연맹의 회칙

제2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국제 연맹의 정관

제3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내부규칙

새로운 회칙과 정관

2003년 10월 로마 임시총회에서 승인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국제연맹의 회칙과 정관을 내어 놓는 지금 이 시간은 연맹의 역사에서 무척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170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우리 빈첸시오회는 단 세 차례 새로운 기본 회칙들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이번 회칙입니다. 이전의 두 회칙은 분명 아주 긴 수명을 누렸습니다.

우리과 같은 공동체에서 회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빈첸시오회의 회원들은 서로 양심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전세계에 널리 퍼진 이 형제적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회원들은 회칙을 따를 의무를 지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소외되고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으로 모였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양들을 자기 오른쪽에 세울 것이다. (...)”(마태 25,31-46) 그리스도의 가톨릭 기관인 우리 빈첸시오회의 회원들은 오로지 도덕적 양심으로 서로 결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결속에는 지난 170년 동안 서로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단결했던 모든 이를 포함합니다.

회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의 5가지 사항입니다.

- 첫째, 개인과 단체가 드리는 기도의 필요성,
- 둘째, 행동을 통한 직접적인 헌신,
- 셋째,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형제애,
- 넷째,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인식의 확대,
- 다섯째, 교회 안에서의 사명입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와 협의회는 기도를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협의회는 19세기 초 기도를 실천에 옮기고 싶었던 파리의 젊은이들의 단체기도 중에 탄생했습니다. 늘 함께 기도를 바치는 생활에 익숙했던 이 젊은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기도를 실천의 삶으로 확장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고통 받는 형제자매를 위한 그 어떤 실체적 행동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대인(對人) 봉사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협의회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협의회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집에서 만납니다. 협의회는 창립시기부터 가난한 이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즉 회칙이 명시하는 것처럼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가난한 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에서 도우려 합니다. 이때의 편안함이란 심리적인 편안함 또한 포함합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이런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그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방문”은 우리의 의무 중 가장 본질적이며 대표적인 봉사 방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 그들에게 제대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의회 내에서 서로 견실한 형제적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들이 개인적이고 단체적인 기도를 통해 교류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회칙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곧 회칙은 우리가 다른 형제들과 두터운 우정 관계를 지니도록 이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회칙은 형제애를 돈독히 하여 우리의 활동뿐 아니라 협의회 자체에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도록 합니다.

통신 수단의 놀라운 발전 덕택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현대 세계에서 가난은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촌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전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가난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가난과 맞서 싸워야 할 소명을 받고 있으며, 가난이 존재하는 어디에서나, 가난으로 고통받는 누구에게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에 맞서기 위해 부름 받았음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들의 일 역시 우리의 일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며 사도로서 교회에 동참합니다. 고통받는 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고통을 덜어주려 하거나 사람들의 상처에 위안을 주려 할 때,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사랑만을 전해야 할 것이며, 회칙은 이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교회를 보다 가깝고 따뜻하게 전할 대표로서의 책임을 지닙니다.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는 우리 빈첸시오회와 각 협의회는 헌신이 교회의 전부로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총이사회는 새롭게 해설이 첨가된 회칙과 국제정관을 내어 놓으면서, 빈첸시오회 지도자들이 이 회칙과 정관을 가능한 한 빨리 숙지하고 각 회원에게 더 많이 전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총이사회는 회칙과 정관의 보급에 힘쓸 것입니다. 19세기 최초의 회칙 제정시에도 그랬듯이 총이사회는 이 회칙과 정관을 정성 들여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스페인 살라만카 총회에서 이 회칙과 정관을 여러분 앞에 내어 놓습니다. 모든 조항은 간단한 해설이 첨가되어 이해를 돕고, 각 조항이 의도한 포부를 쉽게 설명할 것입니다. 좋으신 하느님께 이 해설들이 우리 회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은총을 구합니다.

2005년 6월 파리
14대 총회장 호세 라몬 디아즈-토레모차
(JoséRamón Díaz-Torremocha)

Rule

of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THE SOCIETY OF ST.VINCENT DE PAUL

제1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칙

(2003년 10월 로마 특별총회 인준)

제1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칙

1. 빈첸시오회의 창립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 (ORIGINS OF THE SOCIETY AND SERVICE TO THE POOR)

1.1 창립 (Origins)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전세계에 널리 퍼진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 1833년 파리에서 젊은 가톨릭 평신도 청년들과 그들의 조연자 역할을 맡은 장년의 베일리(Bailly)에 의해 설립되어 초대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에 대한 모범적 헌신의 선례를 보여준 모든 초대 회원들을 빈첸시오회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하고자 한다. 빈첸시오회 창립의 첫 영감을 받은 르 타일랑디에(Le Taillandier)와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Blessed Frederic Ozanam), 폴 라마슈(Paul Lamache), 프랑수아 랄리에(François Lallier), 줄 드보(Jules Deveaux), 그리고 펠릭스 끌라베(Félix Clavé)는 엠마뉴엘 베일리(Emmanuel Bailly)에게서 조언과 도움을 겸손히 구했으며 베일리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초대 총회장이 되었다.

성령께서는 빈첸시오회의 창립시기부터 초대 회원들 모두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가득히 내려 주셨다. 특히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은 성령의 빛과 지혜를 풍부히 받았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창립 때부터 가톨릭 단체였으며 현재에도 평신도를 위한 국제 가톨릭 봉사 조직이다.

해설 - 제1조1항은 빈첸시오회가 그리스도교와 가톨릭 신앙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공고히 선언함과 동시에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부여되는 평신도의 의무와 서약에 대한 평신도들의 이행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평신도의 의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강조되는데, 제1조1항에서 언급된 초대 회원들은 이러한 평신도의 의무를 100년이나 앞서 행한 사람들이다.

성령께서는 초대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일치와 결속을 위해 초대 공동체에도 임하셨다. 즉 성령께서는 회원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가 하느님께서 협의회에 부여한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들이 되도록 하셨다. 창립자들이 성령의 인도에 잘 응답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빈첸시오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를 통해 회원들의 인격적이고 영성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봉사의 목적과 범위

(PURPOSE AND SCOPE OF OUR SERVICE)

1.2 빈첸시오회 회원의 소명 (The Vincentian Vocation)

빈첸시오회 회원의 소명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시며 인간을 해방시키시는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회원들은 직접적인 일대일 만남을 통해 봉사하고 헌신한다. 회원들은 희망을 품고 봉사한다.

해설 - 협의회에 속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소명이다. 즉 가난한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소명이다. 이러한 만남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는 의지와 자비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 오실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과 다름 아니다. 빈첸시오회 봉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통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소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가톨릭 교리서 2232항)이기 때문이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희망을 품고 봉사한다.”: 사람이 공기 없이 단 한 순간도 숨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에게 희망은 공기와 같다. 우리가 하는 일이 신비로운 경로를 통해 대상 가정들의 삶과 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진심으로 믿고 희망한다.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순간에도 “시련 속에 있을 때조차도 희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한다” (가톨릭교리서 1820항)는 말을 늘 잊지 않는다.

1.3 봉사의 형식 (Any Form of Personal Help)

빈첸시오회는 자선 활동의 형식을 가리지 않는다. 고통과 궁핍을 덜어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고결함을 증진시키는 봉사 활동은 그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다.

해설 - 봉사 활동의 형식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은 협의회가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빈첸시오회는 창립 때부터 각 협의회가 활동영역에 자유가 주어져야 각 협의회가 대상가정의 구체적인 필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고결함을 증진시킨다”

“진정한 발전이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들의 능력을 키워나가며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뜻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2세 회칙 백주년 1991 29항)(가톨릭교리서 2461항)

가난한 사람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다.

1.4 도움이 필요한 사람 (To Anyone in Need)

빈첸시오회는 종교, 인종, 사회적 배경, 건강, 성별, 정치적 견해에 상관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다.

해설 - 회원들은 판단하지 않는다. 오로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보시는 하느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 회원들은 한 개인이 삶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고려하고, 방문가정들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참고하여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고 돕는다. 방문가정들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희망을 전달하고, 삶의 본보기로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심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물질적인 빈곤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가난한 이들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그들의 손을 잡아 주거나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할 다정한 이웃이 없다는 것이다."(1845년 매뉴얼 서문)

한편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 다른 회원들, 그리고 친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동안, 정작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위험하다.

1.5 가난한 이웃 찾기 (To Seek Out the Poor)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잊혀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해설 - 이 조항은 우리가 현재 돕고 있는 대상자들에 만족하기 보다는, 그 밖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계속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잊혀진 사람들"을 방문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풍부한 상상력과 관찰력으로 매순간 인간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통을 끊임없이 찾아내어야 한다.

1.6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 (Adaptation to a Changing World)

빈첸시오회는 창립자들의 정신에 충실하여,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적응하고 더욱 새로워지기 위해 늘 노력한다. 인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현재 밝혀지고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가난의 새로운 형태들을 인식하도록 힘쓴다. 빈첸시오회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와 사회에서 가장 배척받는 자에게 우선순위를 둔다.

해설 -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에게 우선순위를 둔다.”

협의회회의 활동은 실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회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안락함과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회칙1.5 해설 참조)

협의회와 회원은 가난한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이를 찾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점을 명심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재정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인 고통 역시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소외시킬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직접적 만남

(OUR PERSONAL ENCOUNTER WITH THE POOR)

1.7

1.7 방문 전 기도 (Prayer Before Personal Encounters or Visits)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는 동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해설 -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그 어떠한 것도 성취해낼 수 없다. (요한 15,5)

따라서 빈첸시오회의 활동시, 각 협의회가 바치는 단체적 기도와 회원들이 바치는 개인적 기도는 필수적이다. 빈첸시오회 로고인 “serviens in spe”는 봉사활동에서의 희망의 필요성을 항상 상기시켜 준다. 우리의 봉사는 내면의 깊은 기도와 반성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 기도와 반성은 협의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

초대 협의회 이래 “방문 전의 성체조배”(Visit before the visit)에 중요성을 두는 전통이 생겼다.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드리는 성체조배는 우리가 하느님의 눈과 손이 되고 하느님의 마음으로써 가난한 이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느님의 뜻과 의지에 맡기는 과정이다. 성체조배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내면의 평정을 위한 잠시의 시간은 꼭 필요하며, 이때는 마음을 가다듬고 성령께 은총을 구한다.

성령께 구해야 할 은총은 다음과 같다.

1. 전체적 상황 및 일의 경중과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필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2.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할 수 있는 용기
3.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분별
4. 자비를 느낄 수 있는 신앙, 즉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사려심
5. 가난한 사람들을 겸손되이 방문할 수 있게 하는 하느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

6. 우리 자신은 형제, 자매를 위해 하느님의 섭리를 간청하는 부족한 인간임을 인식하는 겸손.

방문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과 회원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자 자신 안에 성령을 모신 존재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더 큰 어려움과 불행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똑같은 존엄성을 지닌 인간임을 인식한다.

1.8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 (Reverence for the Poor)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밝고 활기차게 봉사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소망을 존중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느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가난한 이들에게서 고통 받으시는 예수님을 본다.

회원들은 물품 혹은 여타 모든 종류의 도움을 제공할 경우 최대한의 비밀을 지킨다.

해설 - 봉사를 하며 얻는 기쁨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생기는 내면의 괴로움 때문에 감소되지 말아야 한다. 낙천성은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며 모든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이를 육성해야 한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의 견해와 포부를 존중한다. 회원들은 이들의 결핍과 갈망을 채워준다. 때로는 이들의 요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척도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오로지 친절과 모범을 보임으로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의 기준을 강요해서는 결코 안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영혼 구제의 열정에 동반되어야 할 분별력이다. 열정이 언제나 신성(holy)한 것은 아니며, 언제나 하느님에 의해 고취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모든 순간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과 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 스며들기에 적합한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러했듯이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1835년 회칙, *Perfectae Caritatis*, 28 Oct 1965)

1.9 공감 (Empathy)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믿음과 우정에 바탕을 둔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회원들은 스스로의 단점과 나약함을 인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공감하도록 한다. 회원들은 자신들이 봉사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자신의 형제자매처럼 이해해야 한다.

해설 - 우정이 없다면 마음을 나눌 수 없다. 우리 자신의 약점을 깨닫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느낄 수도 없고 전파할 수도 없다. 우리의 믿음과 소명,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갈 기회를 얻은 점, 판단을 피할 수 있게 된 점, 형제들의 요청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감사한다.

“회원들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의 가슴속에 그리스도적인 우정이

피어나도록 한다.” (1845년 매뉴얼 서문)

1.10 자립 증진 (Promotion of Self-sufficiency)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가능한 한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쓴다. 즉 가난한 이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들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운명 역시 바꿀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해설 - 협의회는 빈곤이 존재하지 않길 바란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협의회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울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각자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동행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을 돕고, 괴로움에 처한 이들이 스스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을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회칙7.9 참조)

1.11 내면적 결핍과 영성에 대한 관심

(Concerns for Deeper Needs and Spirituality)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방문 대상자들의 내면적 결핍과 영적인 평안에 진심어린 관심을 가진다. 가난한 사람들의 양심과 신앙을 언제나 깊이 존중하며, 말과 겉모습을 넘어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희망을 전한다. 희망은 가난한 사람들의 내면에서 기도의 영성을 찾게 해준다. 그러한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을 고요히 깨달을 수 있다.

모든 개인은 하느님의 계획을 수락하면서 사랑과 관용, 자기 자신과의 화해 및 내면의 평화, 나아가 가족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씨앗을 키워나가게 된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자기 자신과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더욱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해설 - 우리는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격려하며, 그들만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종류의 삶과 영적 가치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깊이 존중하며”: 이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잘못되거나 죄가 된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목격할 때 그에 동조하거나 침묵을 지키고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세상에 관한 가톨릭 신자 고유의 도덕적 견해가 방문 대상자들의 가치관과 다를 경우에는 복음을 그저 들려주면 된다. 복음을 강요하거나 방문 대상자의 가치관을 비난하지 않도록 한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가난한 이들의 결정은 깊이 존중하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지닌 최고의 미덕인 믿음을 나누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난한 이들과 다투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그들이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기분 상해하지 말며 조언을 받아들이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강요해서도 안된다.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행동 양식들을 제시하고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 조언이 실현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 결실은 하느님께 맡긴다.” (1835년 회칙, 'Preliminary Considerations to the S.S.V.P. Rule 1835)

한편 사람들이 가난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가난이 하느님의 뜻이 전혀 아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가난은 오직 우리가 지구의 자원들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한 탓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은 결과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현존의 체험”: 회칙1.8 해설의 핵심은 우리가 방문하는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보는 것에 있었다. 제1조11항은 회원들이 방문 대상자들의 미덕, 특히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때의 미덕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도록 한다. 태도나 행동의 변화는 은총의 틀림없는 표시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삶에 동참”(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paragraph 1694)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1.12 방문하는 대상자에 대한 감사 (Gratitude to Those We Visit)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대상자 방문을 통해 가난한 이들로부터 받는 수많은 축복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회원들은 봉사의 결실이 그들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가난한 이들로부터 생겨났음을 인식한다.

해설 - 협의회는 회합의 말미에 가난한 이들로부터 받은 행복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가난한 이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과 단체가 절실하게 바친 기도를 통해 얻어진 하느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해준다. “많은 경우 회원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행위를 통해 더 많이 얻는다.” (랄리에, 1837년 8월 협의회 회람)

2. 빈첸시오회 회원의 영성과 소명

VINCENTIAN SPIRITUALITY & VOCATION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은총의 삶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로마 5,1-2)

2.1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사랑 (Love in Union with Christ)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확신하며,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한다. 회원들은 언젠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가 더 이상 회원들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가 되기를 희망한다. (갈라 2,20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한 이들은 회원들의 보살핌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언뜻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해설 - 주님이 무한히 좋으신 분이시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믿음은 우리 빈첸시오회 활동의 출발점이다. 하느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뿐이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성장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당면하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지를 생각해 보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에만 하느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구절들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성경 속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요한 14,26)

2.2 거룩함을 향해 함께하는 여정

(The Journey Together towards Holiness)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거룩함을 향한 여정에 부름받았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일치이며 사랑의 완성이다. 성화(聖化)라는 회원들의 소명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사랑이며, 이는 성화의 소명이 결실을 맺도록 해주는 원천이다. 회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타오르기를 열망하며, 믿음과 헌신이 깊어지기를 원한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스스로의 나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을 필요로 한다. 회원들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느님의 영광을 구한다. 회원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어떠한 보상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회원들은 가난한 이들과 회원들 서로를 도우며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다. 회원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또한 회원들 상호간에 자선과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 속에서 성장해 간다.

따라서 거룩함을 향해 함께 하는 우리의 여정은 근본적으로 다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 회원들은 가난한 이들을 방문하고 봉사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용기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운다. 회원들은 가난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기 자신의 필요로 생각한다.

- 형제적 영성이 가득한 협의회 혹은 이사회의 회합 참석은 영감의 원천이 된다.
- 개인적 수준과 공동체적 수준 모두에서 기도와 묵상의 삶을 향상시키고, 묵상 내용을 동료 회원들과 나눈다. 회원들은 빈첸시오회의 활동 경험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 그리고 하느님의 종으심에 대한 내적인 영적 지식을 얻게 된다.

생각을 행동으로, 자비의 마음을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사랑으로 변화시킨다.

회원들의 개인적 삶이 기도, 성서와 그 외 영적 독서에 대한 묵상, 성체성사, 우리를 늘 보호해주시는 동정 마리아에 대한 신앙,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거룩함을 향하는 우리의 여정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해설 - “함께 하는 여정”: 이는 분명히 회칙의 가장 중요한 조항중의 하나이다. 이 조항을 매우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 깊이 묵상하고 동료 회원들과 묵상을 나눈다. 우리는 홀로 걷고 있지 않다. 우리는 홀로 구원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모든 회원은 그의 형제자매와 함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회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때로 그의 형제자매에게 본보기가 되고 도움을 제공할 책임도 지닌다. 회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협의회 밖에서 어떠한 선행도 성취될 수 없다. 우리가 서로에게 받고 있는 은혜로운 도움을 깨닫지 못하다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봉사도 효과적일 수 없다. 협의회 안에서 생겨난 사랑은 고통받는 이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바탕이 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그리스도와와의 온전한 일치이며 사랑의 완성이다”: 거룩함이라는 용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정의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Lumen Gentium 50항) 거룩함은 “자비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 의해 구현된다.”(Lumen Gentium 39항)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소명은 거룩함의 소명과 같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테살 4,3: 에페 1,4)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성인이 되기 위한 부름을 받았다!

2.3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기도 (Prayer in Union with Christ)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협의회와 그들의 개인적 삶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영적 스승인 가난한 사람들과 회원들 서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로써 하나 되어 하느님께 기도를 올린다.

해설 - 우리 혼자서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어떠한 것도 성취할 수 없다. 회원들이 개인과 단체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하고 그 분의 사랑을 널리 퍼지도록 해준다. 우리의 기도가 성교회(the Holy Church)의 기도와 연결됨을 느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분명 극기와 고결한 헌신의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 우리의 스승이다. 빈첸시오 성인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빈첸시오 성인은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젊음의 샘”이라고 말했다.

2.4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의 영성

(The Spirituality of Blessed Frederic Ozanam)

빈첸시오회 창립자중의 한 명인 프레드릭 오자남의 영성은 빈첸시오 회원들을 깊이 고취시킨다.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은

-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앙과 전시대에 걸쳐 지속되는 교회의 가르침이 지닌 교육적 효과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했다.
- 전 세계를 둘러싼 자선과 사회 정의의 조직 설립을 구상했다.
-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복음 안에서 충실히 살았고, 평신도로서 시복되었다.
- 진리,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해설 - 협의회는 빈첸시오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창립자 중의 한 명인 프레드릭 오자남의 가르침을 이용해야 한다. 프레드릭 오자남의 성숙된 삶은 성교회에 의해 인정받았다. 그는 평신도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본보기가 되는 남편이자 전문적인 직업 인이며 친구였다. 주님께서 프레드릭 오자남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했다.”: 오자남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말과 행동으로서 복음을 선포할 소명을 받았다. (회칙1.11 해설 참조)

“전세계를 둘러싼 자선 조직”: 빈첸시오 회원들은 총이사회의 활동에 기여함으로써 오자남의 포부를 공유한다. 총이사회의 주된 기능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가 각 나라에서 새로운 협의회와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봉사자들을 파견하며 기도를 통해 항상 돕는 것이다. (회칙4.1.2 참조)

2.5 빈첸시오 주보 성인의 영성 (The Spirituality of St. Vincent)

빈첸시오회의 창립자들은 빈첸시오 아 바오로 성인을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성인의 영성에 고무되었다. 빈첸시오 성인의 영성은 성인의 삶의 태도, 생각, 모범적 삶과 성인의 저술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을 위한 성 빈첸시오 영성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직접 땀을 흘리고 봉사하면서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사랑한다.
(To love God, our Father, with the sweat of our brow and the strength of our arms.)
- 가난한 이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이를 본다.
(To see Christ in the poor and the poor in Christ.)
- 복음의 선포자이자 가난한 이의 종이신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시며 인간을 해방시키시는 사랑을 함께 나눈다.

(To share the compassionate and liberating love of Christ the Evangeliser and Servant of the
제1부 빈첸시안의 소명

poor.)

- 성령께서 주신 영감에 주의를 기울인다.
(To heed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해설 - 빈첸시오회의 창립자들은 자선의 위대한 성인 빈첸시오 아 바오로를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삶의 본보기로 삼았다. 빈첸시오회 회원은 빈첸시오 성인을 언제나 기억하여 성인의 발걸음을 따라야 한다. 빈첸시오 성인의 거룩하면서도 대담한 용기와 창의성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에 수반되는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빈첸시오회 회원들에게 항구적인 모범이 되어 준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에 상상력을 풍부히 가지도록 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들을 꿈꾼다. 빈첸시오 성인이 '사랑의 딸회(the Daughters of Charity)'라는 수도회를 조직하고 '사랑의 딸회' 수도자들을 수도원에 얹매이게 하지 않은 채 전세계로 파견할 때 그러했듯이, 우리도 창조적으로 꿈꾸어야 한다. '사랑의 딸회' 수도자들은 오로지 가난한 사람들만을 돕기로 되어 있었고,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성령께서 주신 영감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문구와 은사(회칙1.1, 3.1.1), 기도(회칙1.7, 3.9)에 관한 문구를 통해 회칙은 빈첸시오회가 성령의 영적 빛과 에너지에 더욱 마음을 열도록 요청하고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넘치는 생명'(요한 10,10)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release of the Holy Spirit)'이란 표현은 비범하게 여겨지지 않는 우리의 평범한 재능을 통해 발현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가리키기 위해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우리가 받은 이러한 평범하고 간소한 재능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봉사를 한층 향상시켜줄 것이다.

2.5.1 핵심 덕목 (Essential Virtues)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5가지 핵심 덕목에서 빈첸시오 성인을 닮으려 노력한다.

- **소박(Simplicity)** - 솔직(frakness), 정직(integrity), 진실을 의미한다.
- **겸손(Humility)** - 우리의 나약함과 은사 및 재능에 대한 사실을 인정한다.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며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
- **온유(Gentleness)** - 다정한 언행과 불굴의 선의를 의미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절과 상냥, 그리고 인내를 지님을 뜻한다.
- **고행(Selflessness)** - 자기희생의 삶을 통해 자아를 비운다. 회원들은 시간과 소유물과 재능 및 자기 자신을 관대의 정신으로 내어준다.
- **열정 (Zeal)** - 모든 사람의 번영과 궁극적 행복을 위한 열정을 의미 한다.

해설 - 여기에 쓰인 단어들을 천천히 읽어본다. 이 덕목들은 빈첸시오회 회원들이 앞으로 갖추어야 할 모습과 회원들이 활동해야 하는 올바른 방법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 덕목들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모든 것은 하느님과 만남 안에서 사랑을 통해 가능하다. “빈첸시오 아 바오로 성인의 가장 내면적인 행동을 연구하고 그 분 사상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발견해내면서 빈첸시오 성인이 진정으로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인물임을 알게 된다. 빈첸시오 성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지 배웠기 때문이다. 빈첸시오 성인은 가난한 이들을 돌볼 때 가난한 이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극진히 대접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고, 가난한 이들은 하느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그들을 언제나 공경하고 존중하였다. 또한 자신을 하느님 섭리의 유순한 도구로 생각했으며 언제나 그 분의 섭리에 따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결코 남들을 앞질러 봉사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선행이 자신에 의해 행해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지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빈첸시오 성인은 다른 봉사자들이 장소를 떠난 다음에야 나타났다. 직접 몸으로 열심히 일하여 이마에 땀이 가득한 때에도 겸손되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쓸모없는 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1845년 매뉴얼 서문)

2.6 우리 삶 매 순간의 소명

(A Vocation for Every Moment of Our Lives)

빈첸시오회의 소명은 회원들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어 회원들이 가정, 일, 여가 활동 안에서 더욱 잘 느끼고 보살피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 회원들은 가족과 직업에 대한 책임을 다 한 후에 협의회 일을 맡는다.

해설 - 우리는 빈첸시오회 회원으로서 삶의 매순간,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 협의회에 속한 신분이 일상적 삶과 유리된 부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협의회에서의 경험과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만남, 개인과 단체가 바치는 기도는 우리의 전체 삶에 골고루 스며들어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 혹은 단 몇 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연계되어야 한다. 부모로서, 아들과 딸로서, 직업인으로서, 친구로서 말이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의해 관장되도록 해야 한다.

“더욱 잘 느끼고 보살피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타인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웃과 직장 동료, 혹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눈에 비쳐진 회원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3. 회원, 협의회, 이사회 –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MEMBERS, CONFERENCES, COUNCILS COMMUNITIES OF

FAITH & LOVE

3.1 회원 (Membership)

빈첸시오회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에게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신앙에 따라 살고자 하는

제1부 빈첸시안의 소명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회칙 6.4 참조)

해설 - 빈첸시오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빈첸시오회는 폐쇄적이거나 고립된 단체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단체가 새로운 회원을 받아 성장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느님 사랑을 증언하고, 또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증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신입회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언제나 협의회내의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즉 우리 회가 깨어있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봉사하는 사회의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더 이상 맞닿아있지 않다는 징후일 수 있다.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가며 조그마한 봉사들을 발전시켜 나가자. 매년 새로운 생각들이 샘솟아 올라 협의회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성과에만 만족하는 무감각 상태를 피하도록 한다.” (1845년 매뉴얼 서문)

3.2 평등 (Equality)

빈첸시오회는 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협의회 내에서 성별, 재산, 직업, 사회적 지위나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

해설 -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인종에 관계없이 이들 모두는 협의회 내에서 가난한 이를 위해 헌신하며 하느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선을 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견해를 지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되어 자선의 가르침을 깨달으려 하는 모습을 보며 매력을 느끼게 된다.” (1845년 매뉴얼 서문)

3.3 빈첸시오 회원의 회합 (Meetings of the Vincentian Members)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믿음과 사랑, 기도와 실천의 진정한 공동체인 협의회 내에서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형제자매로서 만난다. 회원들 간의 영적 유대와 우정은 필수적이다. 이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도우려는 공통된 사명이 회원들에게 불가결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빈첸시오회는 회원들의 참되고 유일한 세계적인 공동체이다.

해설 - “회원들의 세계적인 공동체”:

여기서 회칙2.2 해설을 다시 읽도록 권장한다. 동료회원 상호간의 사랑이 없다면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 상호간의 사랑이란 우선 회원들이 직접 속한 협의회 내의 사랑을 말하고, 그 다음엔 전 세계 모든 회원들을 포함하는 단 하나의 커다란 협의회(a single immense Conference)의 회원으로서의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협의회가 있는 날은 신나는 축제였다. 한 주일 내내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기 때문이다.”(1845년 매뉴얼 서문)

“영적 스승이신 주님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서로를 사랑할 것이다. 현재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서로를 사랑할 것이다. 각 협의회, 지역, 국가 어디에서든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모두 서로를 사랑할 것이다. 깊은 우정은 서로의 단점을 감쌀 수 있게 만든다.”(1835년 회칙, Perfectae Caritatis, 28 Oct 1965)

“자신의 소명을 따르지 않는 회원”:

“우리는 어떠한 형제에 대한 나쁜 소문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물증(物證)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경우, 이웃을 돌볼 것을 명하신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 자비의 정신과 진실된 우정에서 나온 친절과 따뜻함으로 그 형제에게 권고하고 충고한다. 그가 더 강한 사람이 되도록 돕고 잘못을 극 복하도록 돕는다.” (1835년 회칙, Perfectae Caritatis, 28 Oct 1965)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 즉 회원들 간에 사랑이 넘치며 협의회가 성령님의 모든 은사에 활짝 열려 있을 때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게 된다는 의미이다. 오자남은 초대 협의회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했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번개를 흩뜨리기 위해 구름을 모으시는 하느님께서 사랑의 사랑을 흩뿌리기 위해 영혼들을 끌어 모으신다(God who draws the clouds together to scatter the lightning, also draws souls together to radiate love).” 이는 회원 전체가 모여서 이론 사랑은 회원들이 개별적인 개인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사랑의 크기를 훨씬 초월한, 거대하게 확장된 사랑(immense amplification of love)임을 의미한다.

3.3.1 회합의 주기 (Frequency of the Meetings)

협의회는 정기적이고 일정하게 회합을 가진다. 매주 회합을 갖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2주일에 한번은 개최하여야 한다.

해설 - 친구들은 서로 자주 보고 싶어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를 다급하게 원한다. 이 조항은 적어도 2주에 한번은 회합을 개최해야 함을 규정한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1주일 단위로 모임을 가져 모든 사안들을 토론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각자 행하는 덕행(isolated virtues)은 쉽게 사그라진다. 덕행들이 함께 얹혀 있을 때만이 시들지 않는 화관(花冠)을 형성한다.”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 1838년 리옹에서 빠리 협의회에 보낸 편지)

3.4 형제애와 소박함 (Fraternity and Simplicity)

회합은 형제애와 소박함, 그리고 그리스도적 기쁨의 정신 안에서 개최된다.

해설 - 회칙2.5 해설과 2.5.1호 해설을 다시 읽는다.

2.5 해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어졌다(given).’ 그러나 우리에게 ‘속한(belongs)’ 것은 없다. 우리는 그저 소박하고 순박해야 한다. “서로 따뜻함을 나누고 친절해야 하며 친절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 (1835년 회칙, 'Preliminary Considerations to the S.S.V.P. Rule 1835) “친구는 삶을 두 배로 윤택하게 해준다.”(랄리에, 1837년 3월 회람)

3.5 활기찬 기운의 유지 (Preserving the Spirit)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은 젊음의 활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젊음의 활기란 열정, 융통성,

제1부 빈첸시안의 소명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백을 지닌 회원들은 기꺼이 희생하며 어디에서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려 한다. 회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과 슬픔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권리를 변호한다.

해설 - 이미 회칙2.5에서 꿈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젊음이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시기이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고, 모든 일에 감동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봉사의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하다. 고통이란, 고통을 없애 보려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언제나 자비의 정신으로 고통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와중에서도 분별력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가르치거나 배우기를 멈췄을 때에만 늙는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봉사에서 마음이 늙지 않도록 한다. (회칙1.9, 2.2, 2.3 참조)

3.6 이사회 (Councils)

각 협의회는 다양한 단계(various levels)의 이사회 산하에 속한다.

이사회는 협의회들을 조정하고 협의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사회는 협의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봉사를 강화하며 활동을 다양화하도록 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요구에 재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단계의 이사회는 각기 다양한 임무를 갖는다. 그 임무들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협의회를 만들고, 기존의 협의회를 확장시키도록 도우며, 특별사업(Special Work)을 추진하고, 연수과정을 준비하고, 빈첸시오회 회원들이 연수에 참석하도록 하며, 빈첸시오 가족(Vincentian Family)끼리의 협력에 관심을 가지도록 권장한다.

또한 다른 조직과 기관과의 협력을 장려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회원들끼리의 우정을 도모하며, 협의회와 상위 이사회간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요약하자면 이사회는 전 세계에 널리 퍼진 빈첸시오회의 소속감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한다.

해설 - 이사회는 협의회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 조항은 정성을 들여 읽어야 한다. 이사회는 협의회를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에게 요청되는 업무는 상기 조항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사회는 요청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협의회는 이사회의 노력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사회는 우리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굳은 믿음과, 어느 누구도 나머지 회원들에게 명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생겨났다.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이고 하나의 영혼이다: cor unum et anima una." (1845년 매뉴얼 서문)

3.7 청년 회원들 (Young Members)

청년 회원들은 빈첸시오회를 젊게 유지한다. 청년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때로 더 멀리 내다보기도 한다. 빈첸시오회는 청년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모든 협의회는 청년 회원들을 환영한다. 신앙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경험하고 가난의 모습들을 직접 살펴보면서 청년들은 영성을 성숙시키게 되고 실천적 삶에 격려를 받게 되며, 진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 장년 회원들은 청년 회원들의 연수과정을 도울 책임을 맡는다. 장년 회원들은 청년 회원들이 빈첸시오회 봉사활동을 하고자 한 개인적 선택과 열망을 존중한다.

해설 - 장년 회원들이 청년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장년 회원들의 봉사는 청년 회원들에게 가르치거나 명령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장년 선배들이 청년 회원들의 갓 시작한 여행길-즉 청년 회원들의 삶 자체-에 직접적이고도 유용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봉사는 지지와 모범과 겸손의 모습을 띄어야 한다. 협의회 창설을 꿈꾸고 열망했던 청년들과 당시 장년이었던 베일리는 가까운 사이였고, 베일리는 모범과 훌륭한 노력을 보여 이들이 초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베일리는 후에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초대 총회장을 맡는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재량권을 주면서 청년들의 의문과 열망에 대한 장년들의 견해를 확실히 밝히고, 청년들이 그들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3.8 총이사회의 협의회와 이사회의 인준 (Aggregation and Institution of Conferences and Councils)

총이사회의 협의회와 이사회 인준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장치이다.

해설 - 회칙 제1조는 “우리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 공동체이다”라고 규정한다. 총이사회의 인준에 의해 전 세계의 형제적 공동체인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에 정식으로 속하게 된다.

3.9 보조성의 원리 및 활동의 자유 (Subsidiarity and Freedom of Action)

빈첸시오회는 보조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Subsidiarity)를 봉사활동의 근본 규범으로 채택한다. 해당 지역사회 환경과 상황(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결정은 활동 지역의 현실에 맞게 내린다. 이런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봉사문제에 관한 빈첸시오회의 주도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협의회와 이사회의 활동의 자유는 빈첸시오회의 창립 시기부터 성실히 지켜져 왔으며, 이 자유는 협의회와 이사회가 지나친 관료 체제에서 벗어나 가난한 사람들을 자발적이고 효과적으로 돕도록 만들었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해당 협의회 활동지역 내에서 가난을 없애기 위해 활동의 자유를 사용하면서 하느님의 인도와 힘, 그리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창조적 상상력의 은사를 위해 함께 기도할 소명을 느낀다.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요엘 3,1)

해설 - 전 세계적인 조직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권한과 회칙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리가 협의회 창립 시기부터 지켜져 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고통 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장 잘 알려진 곳은 바로 지역사회이다. 따라서 모든 협의회는 회칙의 정신 안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각 협의회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대로 봉사할 전적인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이것이 협의회와 이사회가 모든 방식에서 자율적이란 뜻은 아니다. 협의회와 이사회는 자국의 민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빈첸시오회의 회칙과 정관을 지켜야 하며, 국가 이사회의 정책과 전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빈첸시오회의 명성과 투명성을 위해 국가 이사회는 정확하고 간소하게 회계를 작성하고 감사활동을 할 것을 요구한다. 적절한 경우 모든 빈첸시오회는 통합금융(central banking)과 연결회계(consolidated accounts)를 사용하도록 한다.

3.10 민주주의 (Democracy)

모든 결정은 기도, 묵상 및 협의를 거친 후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진다. 민주주의 정신은 모든 빈첸시오회 공동체(at all levels of the Society)의 바탕을 이루며 특정한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진다.

해설 - "협의": 다른 회원보다 더 현명하거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지 확신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하느님처럼 꿰뚫어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따뜻한 자비의 마음과 명석함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고 논의한다. 많은 경우, 문제의 해결책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제시된다. 주님은 누구든지 깨우쳐 주실 수 있다. 지나치게 자기 주도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의 의욕을 다소 잃게 할 수 있고 갈등의 원천이 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빈첸시오회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총의"(consensus): 다른 이의 의견을 다 들은 후에 결정을 내린다.

'총의'란 어느 누구도 다른 견해를 제시하지 않을 만큼 명백한 반대를 하지 않는 전반적인 동의 상태를 의미한다.

3.11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회장 (Presidents as Servant Leaders)

모든 공동체의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회장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며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힘쓴다. 회장은 회원들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영적 은사가 드러나고 발전하여 가난한 사람에 대한 봉사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어 주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협의회와 이사회의 회장은 빈첸시오 회원들의 영성을 증진시킬 특별한 임무도 가진다.

해설 - 회장의 임무는 바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회장의 임무가 섬김이듯이 협의회는 임무도 마찬가지로 봉사이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협의회는 회장의 성격을 닮게 된다. 회장이 협의회를 주재해서도 아니고, 회장의 협의회에 대한 요구나 회장의 지식 때문도 아니다. 이는 바로 회장이 각 회원들에게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차이 때문이다. 회장은 회원들의 말을 잘 듣고

격려하며, 회원들과 함께 동행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더 나은 봉사를 하도록 회원들로부터 최대한의 것을 끌어낼 수 있다. 회장은 협회회의 핵심 인물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회장들의 겸손 때문에 이 사실이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회원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임명된 회장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끌고 방향을 잡아주어야 한다. 회장은 필수적인 지식과 함께 종교적 신념의 진심어린 실천을 견비해야 하며, 신중함과 조정 능력도 지녀야 한다.” (베일리, 초대 총회장, 1844년 3월 회람) 이상적인 의미에서 봉사자로서의 회장은 깊은 신앙심을 지녀 그 신앙의 빛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고요히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어야 한다.

3.12 회원양성 (Formation of Members)

회원과 임원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빈첸시오회의 필수적인 업무이다. 교육을 통해 빈첸시오회에 대한 회원들과 임원들의 지식과 영성을 심화시키고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동시에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급부나 가용 자원, 기회 등을 알려주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의 질과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빈첸시오회는 회원들에게 더 높은 단계의 교육 연수를 제공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적, 사회적 수준 향상을 도울 수 있다.

해설 - 각 협의회에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빈첸시오회 회원은 지속적인 사회 변화, 새로운 법제화, 새로운 가용 자원 등 시대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거의 매일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다. “우리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45년 매뉴얼 서문)

“필수적인”이란 단어는 강한 뜻을 내포한 단어이다. 이는 모든 국가 이사회가 그 자체 내에서, 혹은 다른 빈첸시오회의 지원을 얻어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을 뜻한다.

3.13 가난과 격려의 정신

(The Spirit of Poverty and Encouragement)

빈첸시오회의 회원들은 가난과 나눔의 정신으로 함께 결합되어 있다. 회원들은 깊이 있는 영적 삶과 성실한 기도를 위해 서로 격려한다. 이 목적을 위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해설 - 가능한 한 각 협의회에 성직자가 참여하여 협의회를 풍성하게 하도록 한다. 성직자는 회원들을 더 온전하고 헌신적인 삶의 방향으로 이끌고 격려해준다. 협의회는 평신도로서의 궁극적 책임을 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성직자가 우리 모임에 베푸는 공헌의 중요성이 경감되지는 않는다. 성직자에게 높은 존경과 경의를 간직하며 신앙이나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성직자의 의견을 특별히 더 존중한다. 그러나 이것이 빈첸시오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태만히 하거나, 성직자의 손에 내맡기게 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세례를 받은 평신도인 회원들은 자신들에게 위탁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관해 스스로 헌신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제1부 빈첸시오회의 소명

3.14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정의 사용

(The Use of Money and Property for the Poor)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재원을 제공하는 것보다 사랑과 재능과 시간을 베푸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첸시오회는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돈과 자산을 사용한다. 빈첸시오회의 재원은 최대한 신중히 분별력을 지니고 관대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재원은 축적되지 말아야 한다. 재원의 사용에 관한 결정은 복음말씀과 빈첸시오회의 원칙적 관점에서 숙고한 뒤에 이루어져야 하며, 재원의 모든 출입에 관해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빈첸시오회는 재원을 다른 기관에 할당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때때로 빈첸시오 가족과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원을 할당할 수 있다.

해설 - 오래전에 한 회원은 돈을 '악마의 분노'로 부르곤 했다. 돈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적절히 사용 되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돈은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 확고히 믿어야 한다. 따라서 협의회는 사용하고 남은 재원을 모아두는 대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협의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끔 나눔의 정신이 실패하여 부정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이는 각 협의회가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3.15 정보교류 (Communication)

빈첸시오회 조직의 생명력은 정기적이고 신속한 뉴스와 정보 교환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정보교류는 회원들의 안목을 넓혀주고 세계 도처에 있는 형제 자매의 경험과 도전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증폭시켜 줄 것이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과 열정으로 정보교류에 참여한다.

해설 - 정보의 교류가 없다면 빈첸시오회의 상호의존적인 특성은 유지될 수 없다. 이는 협의회에서 가장 흔히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다. 다른 협의회 회원들과 우리의 활동, 즉 봉사를 더 쉽게 하는 방법이나 특정한 형태의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서로 나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 낸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경험을 공유한다. 이러한 경험의 공유와 나눔이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봉사할 수 없으며, 가난한 이를 돕는 방법이 향상되거나 새로운 재원을 유인할 수 없다. 빈첸시오회 관련 잡지 혹은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는 나라나 이사회는 정보교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자료를 다른 국가의 빈첸시오회나 총 이사회에 배포해야 한다.

4. 빈첸시오회와 가톨릭 자선조직망 내에서의 관계

RELATIONSHIPS WITHIN THE VINCENTIAN & CATHOLIC NETWORK OF CHARITY

4.1 자매결연 (Twinning)

협의회와 이사회는 도움이 필요할 때 국내적 수준과 국제적 수준 양면으로 서로 돕는다. 이는 빈첸시오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활동 중 하나이다. 현재 많은 나라에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단체인 빈첸시오회는 다른 협의회와 이사회가 부족한 재원으로 힘들어 할 때 혹은 그 외 특수한 상황에서 서로 도와야 한다.

두 협의회 혹은 이사회간의 자매결연은 기도, 깊은 우정, 물질적인 자원의 공유로 구성된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매결연은 세계평화 및 민족간의 문화교류와 이해에 이바지한다.

해설 -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내에서 절대적 가난에 시달리는 다른 회원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써,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협의회를 돕는데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빈첸시오회를 도와주기 위해 매년 송금하는 재원의 양은 엄청나다. 전세계의 빈곤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돕지 않을 수 없다. 빈곤의 경감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가까이 존재하는 빈곤문제를 관리하는 것에 스스로를 한정시키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빈첸시오회 임무의 참된 특성을 깨달은 협의회는 작은 경제규모를 지닌 다른 나라 회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다. 그러한 도움을 받은 나라의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자국에서 가장 어려운 자들을 도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게 된다. 오직 신앙의 힘으로만 볼 수 있는 먼 나라의 가난한 이들을 그 나라의 회원들을 통해 돕는 것은 분명,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이다.

4.1.1 우정의 기본인 기도 (Prayer as the basis of friendship)

자매결연은 영성, 깊은 우정, 연대와 상호도움을 증진시킨다. 협의회나 이사회는 자매결연 지역의 대상 가정들을 돕도록 자금이나 다른 물질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매결연을 맺은 협의회가 지역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의학적, 교육적 지원을 통해 각 협의회들의 자립(Self-Sufficiency)을 도와준다. 기도를 통한 상호 지원과 대상 가정에 대한 소식 혹은 각 지역에서의 성과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보교류는 더욱 중요하다.

해설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도를 통한 영적 지원도 필요하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기도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작은 개인적 희생 혹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동료 회원을 돕는 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빈첸시오회 회원들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할 우리의 공통된 임무를 통해 그들과 연결된 느낌을 가진다.

4.1.2 빈첸시오회 회원의 개인적 헌신

(Vincentians' Personal Commitment)

빈첸시오회는 회원들에게 일정 기간 다른 나라의 빈첸시오회 회원과 함께 일하거나 협의회를 확장시킬 개인적 헌신을 요구한다.

해설 - 시간과 능력의 여지가 있는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세계 다른 곳에서 자원 봉사한다. 이들은 “평화를 위한 빈첸시안(Vincentians for Peace)”이라 불린다.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로 구성된 “평화를 위한 빈첸시안”들은 일정 기간 다른 나라의 협의회를 총체적으로 돕거나 구체적인 특별 사업을 도우며 헌신한다. 이는 자매결연의 일종으로서, 개인적인 경험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4.2 긴급지원 (Emergency Assistance)

빈첸시오회는 재난이나 전쟁, 혹은 대형사고 발생시 앞장서서 돕고 해당 지역의 빈첸시오회에 이재민 원조를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해설 - 빈첸시오회는 총이사회가 담당하는 긴급 지원용 자금 계좌를 만들어 항상 관리한다. 전세계의 협의회와 이사회는 이 계좌에 일정 자금을 기부할 책임이 있다. 예상치 못한 재난 사태 발생시 총이사회는 모든 빈첸시오회를 대표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협의회와 이사회에게 필요한 재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긴급 사태시 협의회는 더 큰 규모의 봉사 조직이 개별적으로 돌보아주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돕는다.

4.3 빈첸시안 가족 (The Vincentian Family)

전세계에 있는 빈첸시오 회원들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영성에 고무되어 생겨난 다른 공동체들과 더불어 한 가족(a single family)을 형성한다. 빈첸시오회는 초대 협의회가 복자 로잘리 랑뒤(Blessed Rosalie Rendu) 수녀로부터 받은 성원과 격려를 감사히 기 역하면서 빈첸시오회 만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가운데, 빈첸시오—안 가족의 다양한 공동체 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빈첸시오회는 고통 받는 이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될 경우 교회의 자선사목 뿐 만 아니라 영적 성장과 상호 유익한 공동의 사업을 위해 협력한다.

해설 - 창립자들의 희망에 성실히 보답하기 위해 협의회는 빈첸시오 성인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한다.(회칙 2.5, 2.5.1호 참조) 이를 통해 자선의 성인이었던 빈첸시오 성인의 영성을 함께 공유하는 교회 내의 조직들과 더불어 우리의 노력과 도전 경험들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사랑의 딸회(Daughters of Charity), 빈첸시오 아 바오로 전교회(Congregation of the Mission), 평신도 선교사회(Religious of Saint Vincent), 애덕부인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arity), 빈첸시안 마리안 청년회(Vincentian Marian Youth) 와 빈첸시오 성인의 평신도 선교조직(MISEVI)와 같은 단체들과 더불어 성직자와 평신도가 협조를 이루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잘 봉사하기 위해 노력한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협조는 성교회(Holy Church)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협의회는 초대 영적 지도자였던 복자 로잘리 랑뒤 수녀를 기억한다. 로잘리 랑뒤 수녀는 협의회 창립 때부터 젊은 초대 회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그녀의 조언과 모범은 초대 회원들이 평신도의 소명에 맞게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로잘리 랑뒤 수녀는 청년들이

그녀를 필요로 할 때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 로잘리 랑뒤 수녀는 마치 삶의 여정을 갖 시작하여 아직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에게 책임감과 독립심을 기원하는 어머니와 같았다.

5. 가톨릭 교계 제도와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CHURCH HIERARCHY

5.1 긴밀한 관계 (A Close Relationship)

빈첸시오회는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과 동료들의 확고한 의지에 걸맞게 가톨릭 교계 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회원들의 교계질서 존중은 조화로운 상호 협력의 밑바탕이 된다.

해설 - 협의회는 교회내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 성교회 교계질서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사랑을 지닌다. 빈첸시오회는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본당, 교구, 혹은 교황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 과정은 상호적이다. 교회법은 “평신도는 그들의 지식, 권한,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본당 사제에게 교회에 도움이 되는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때로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다. (교회법 제212조3항)

또한 빈첸시오회는 다음 조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결사(associations)와 운동(movements)은 보편적인 교회 질서와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요한바오로 2세 교황권고 새천년기 2001, 46절)

5.2 자치권 (Autonomy)

빈첸시오회는 그 존립(existence)과 구성(constitution), 조직(org- anisation), 회칙, 활동 및 내부 규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치권을 누리어 왔다. 회원들은 자국에서 시행되는 빈첸시오회의 회칙과 자국의 법률에 따라 임원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회의 활동과 자산을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해설 - 대부분의 나라에서 빈첸시오회는 합법적인 민간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빈첸시오회는 모든 활동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활동의 전개에 있어 어떠한 공식적 허가도 필요하지 않다. 빈첸시오회의 자치권은 특히 1920년 11월 3일 교황청에 의해 내려진 결정 이래 계속 인정되고 있다.

5.3 도덕적 승인 (Moral Recognition)

빈첸시오회는 해당 교구 주교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빈첸시오회의 어떠한 활동도 가톨릭의 믿음과 가치에 위배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빈첸시오회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표시의 일환으로 가급적 해당 교구 주교에게 연간 활동을 보고한다.

해설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모든 협의회는 성교회의 충실한 자녀이기를 희망하며 각 교구 주교의 권능을 인정한다. 협의회는 가난한 사람들과의 일대일 접촉을 증진시키며 주교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교구의 사회사목과 관련해서 각 교구 주교와 협력한다.

특히 해당 교구 안에서 빈첸시오회의 활동이 가톨릭 신앙 및 도덕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주교의 권능이다. “우리는 교계제도의 축복을 받지 않는 사업을 결코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 교회 관할권내의 최고 담당자와 협의하지 않고서 교회 관할권내의 새로운 중요 업무를 맡지 않을 것이며, 교회의 영적 권위에 대항하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1835년 회칙, Perfectae Caritatis,)

6. 교회일치운동과 교파간 관계

ECUMENICAL & INTER-FAITH RELATIONSHIPS

6.1 전 회원의 교회일치운동 촉진

(Every Member Should Foster Ecumenism)

빈첸시오회의의 모든 회원들은 교회일치운동과 자선 및 정의 사업 협력에 개인적 헌신을 증진시켜 교회의 온전하고 가시적인 통합의 실현에 기여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요한 17,21)

해설 - 빈첸시오회의와 협의회, 그리고 각 회원들은 성교회가 지정한 교회일치운동의 요건들을 잊지 않도록 한다. ‘회칙’에 의하면, 이러한 교회일치운동을 존중할 서약을 의무로서 지정할 수는 없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교회일치운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일치를 향한 갈망은 새로워진 마음과 태도(에페 4,23 참고) 및 자기부정(self-denial)과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생기는 것이며, 이는 곧 성숙을 향한 발걸음이다.” (Unitatis Redintegratio, 7) 성령께 대한 기도는 우리를 이러한 마음의 변화로 이끌어준다.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paragraph 1108 참고)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분열은 그리스도의 뜻에 분명히 상반된다. 분열은 세상에 장애물이 되고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언하라는 가장 거룩한 목적에 피해를 끼친다.” (Ut Unum Sint, 6) “교회일치운동을 하는 이들은 삼위일체의 하느님에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모시며 이를 개인수준에서 행할 뿐 아니라 단체수준으로 확장시킨다.” (Unitatis Redintegratio, 1)

6.2 교회일치운동과 교파간 협력에 충실한 빈첸시오회 (The Society is Committed to Ecumenical and Inter-Faith Cooperation)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회의 자선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교회일치적인 교파간 대화와 협력의 사명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권장한다. 빈첸시오회는 각 나라에서 행해지는 교회의 교파간 일치 운동에 교구 주교의 지침에 따라 참여한다.

해설 - 빈첸시오회는 교회의 요구사항을 인식하며 세계 어디서나 각 교구의 지침에 따른다. 각

협의회는 각 지역에서의 가톨릭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따라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지역 주교의 지침을 잘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만일 다른 교파 사람들과의 협력이 믿음을 잃어버린 현대 사회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 신앙의 사랑과 지식, 뜻과 사명의 일치를 반영한 관대한 우정과 믿음, 그리고 하나됨을 쉽게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3 실천적인 실천수범 (The Adoption of Practical Initiatives)

협의회와 이사회는 필요시에 다른 그리스도 교회나 교회 단체에 존재하는 비슷한 목적의 단체와 자선업무의 협력을 위해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해설 -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서 협의회가 설립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 보조성의 원리(회칙 제3조9항 참조)는 서로 다른 협의회와 이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함에 있어 누구와 협력을 할 것인지 지역적으로 각기 결정하도록 허락한다. 그러한 경우 협력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조언을 구하는 분별이 요구된다. 협력은 언제나 회의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 (회칙 6.7 참조)

6.4 교회일치적인 교파간 회원가입

(Ecumenical and Inter-Faith Membership)

일부 국가에서는 빈첸시오회의 정체성과 원칙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다른 교파의 그리스도교인이나 사람들을 입회시켜야 할 상황이 더 바람직할지 모른다. 이 경우 주교회의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해설 - 세상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를 도우려는 사명감을 느낀다. 협의회는 그들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했듯이 협의회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들을 도우려는 노력에 더해서, 협의회가 전세계에 널리 퍼진 가톨릭 공동체의 일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교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된 회원들은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교파 회원들의 믿음과 양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빈첸시오회의 가톨릭 정서에 본질적인 기도와 다른 영적 관행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회의 가톨릭 정서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회칙은 지역 주교회의의 자문을 받을 것을 강조한다. 이 조항은 꼭 지켜져야 하며, 그것이 우리 영혼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유익할 것이다. (회칙 3.1 참조)

6.5 가톨릭 교리와 정신 보존

(Preserving the Catholic Credo and Ethos)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가톨릭 교리와 정신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장과 부회장과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지역교구 주교와 협의한 후에는 다른 교파의 일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 교리 중에서 성체 안에 실재하신 그리스도(the real presence of Christ in the Eucharist)와 칠성사(the seven Sacraments), 마리아 공경(de

제1부 빈첸시안의 소명

votion to Mary)을 믿는 교파여야 한다.

해설 - 회장은 영적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빈첸시오회의 영성과 가톨릭 기풍을 증진시킬 의무를 지닌다. (회칙 3.11 참조) 이 의무는 경우에 따라 회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회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의무를 내면의 양심으로부터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람에게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1999년의 빈첸시오회 총회는 적어도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회원들이 이러한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나라안의 가톨릭 교계는 그 밖의 다른 교계나 교회 공동체가 이 기준에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서기나 회계등과 같은 다른 직위는 빈첸시오회의 영성을 증진시킬 구체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회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6.6 제휴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Affiliated Groups Can Work Very Closely with us)

빈첸시오회는 제휴의 원칙을 승인한다. 제휴 단체는 주로 빈첸시오회의 일, 혹은 영성에 이끌린 다른 교파의 그리스도 교회나 공동체의 회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빈첸시오회의 자선 사업, 이사회의 특정한 토론, 형제적 삶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으나, 빈첸시오회의 직위 부여에는 적합하지 않다. 비그리스도교 단체와도 마찬가지로 제휴할 수 있다.

해설 -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종파나 종교 단체를 이 조항에 명시된 권한의 한계 범위안에서 제휴자의 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빈첸시오회는 그들의 입회를 수락할 수는 있으나 빈첸시오회의 가톨릭적 정신으로 인해 그들의 대표직위 적격성은 배제한다.

6.7 국가 기관 및 타 자선단체와의 관계

(Relationships with State Agencies & Other Charities)

당면한 문제가 빈첸시오회의 권능이나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에, 빈첸시오회가 당면하고 있는 불의와의 투쟁에 도움이 되고 빈첸시오회의 정신이 존중되는 때에 한하여 국가 기관 및 보다 전문화된 자선기구와 접촉할 수 있다.

해설 - 지구화되어 가는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진다. 협의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빈첸시오회의 업무를 도와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조직이나 기관 혹은 기구와 즉각적인 협력을 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한다. 신중하고 주의깊은 태도만이 성교회의 도덕적 가르침에 반대되는 시각을 지닌 단체나 사람들과의 협력에서 따를 수 있는 추문에 빠지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약자에게 외관상 불쾌한 것과 추문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835년 회칙, Perfectae Caritatis, 28 Oct 1965)

7. 시민 사회와의 관계 - 사회정의를 위한 노력

RELATIONSHIP WITH CIVIL SOCIETY WORK FOR SOCIAL JUSTICE

7.1 단기적 도움 및 중장기적 해결방안(The Society Gives Immediate Help but also Seeks Mid-term and Long-term Solutions)

빈첸시오회는 사회의 결핍을 충족시킴은 물론 이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밝히는데 관심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 빈곤을 불러 일으키는 근원을 조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자선적인 활동에는 정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의를 추구 할 때에도 빈첸시오회는 자선의 요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해설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와 각 협의회는 그들이 돕는 모든 개인들의 영적 물질적 발전을 추구한다. 빈첸시오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고통을 완화시키려 노력한다. 이 목적을 위해 빈첸시오회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애덕을 품고 정의를 재정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평화는 사랑의 열매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정의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Gaudium et spes, 78)

7.2 세상에 널리 퍼지는 사랑의 비전

(A Vision of the Civilization of Love)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모든 인류의 존엄과, 소외자의 모습으로 발현하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빈첸시오 회원들은 모든 이의 권리와 책임감과 성장이 진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

빈첸시오회 회원은 하나된 세상(one world)의 시민으로서, 교회의 요청에 귀기울여 더욱 동등하고 자비로운 사회질서의 창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명의 문화와 사랑의 전파에 힘쓴다. 이를 통해 빈첸시오회는 교회의 사명을 따라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말과 행동으로서 복음을 증거한다.

해설 - 빈첸시오회 회원으로서 단지 가난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의 부족한 능력이 허용하는 대로 빈곤문제의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협의회와 회원의 절대적 사명이란 복음과 사랑의 전파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단순히 말로써 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랑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고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의지를 가난한 이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된 세상의 시민으로서”: 물론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각국의 충실한 시민들이다. 그러나 공익 증진을 위한 회원들의 관심은 전 세계를 아우르며 회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

“생명의 문화”: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지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세속적 관념으로부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믿는 생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다.

7.3 미래의 청사진 (Vision of the Future)

빈첸시오회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에 힘쓴다.

해설 - 빈첸시오회의 자매결연 사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환경보호”: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자연을 창조하셨으므로 환경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환경의 관리자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7.4 사회정의를 위한 빈첸시오회의 실천적 접근법 (The Practical Vincentian Approach to Social Justice)

사회정의 문제에 접근하는 빈첸시오회 고유의 특징은 불의로 신음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사회 문제를 보는 것이다.

해설 -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없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박해받는 자, 배고픈 자, 착취당한 자들의 시각이 곧 우리의 시각이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시각과 견해를 대변할 것이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7.5 침묵하는 자의 대변인 (A Voice for the Voiceless)

빈첸시오회는 가난한 이와 억압된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들이 말할 수 없을 때 빈첸시오회가 대신하여 말하여야 한다.

해설 - 우리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실을 말하고 고통을 밝히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먼저 소외된 사람들이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즉 그들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없을 경우 우리가 직접 말 못하는 이를 위한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7.6 구조적인 죄악과의 직면 (Facing the Structures of Sin)

불의한 경제, 정치, 사회적 구조 혹은 부적절하고 부정한 법제 때문에 불의와 불평등, 가난과 소외가 만연한 곳에서 빈첸시오회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러한 상황에 맞서며, 언제나 애덕의 마음으로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해설 - “애덕의 마음으로 분명한 목소리 내기”: 구조적인 죄악은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에서 얻은 확신과 용기로,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러한 사회구조를 고발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향한 애덕의 마음은 구조적인 죄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공격하면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오자남은 사회의 부조리한 점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량한 사람들이 일관성없이 행동하고 소심하게 대처함으로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이 행해졌던가.” 그러나 오자남은 동시에 우리에게 다음을 상기시킨다. “그리스도인은 논쟁 중에서도 친절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인간 이하의 주거조건, 자의적인 투옥(arbitrary imprisonment), 추방, 노예제도, 매춘,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매매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 자유롭고 책임있는 인간으로 대우하기보다 단순히 이윤의 도구로만 취급하는 굴욕적인 노동 조건, 이런 모든 것들은 참으로 인간의 불명예이다. 이것들이 인간 사회를 타락시킨다.”(Gaudium et spes, 27) “또한 수백만명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불평등의 죄악도 존재한다.”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paragraph 1938)

7.7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Striving to Change Attitudes)

빈첸시오 회원들은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하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편견과 두려움 혹은 경멸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변화시키려 노력한다. 이러한 시선은 다른 사람들의 존엄을 심각하게 해치기 때문이다.

빈첸시오회는 애덕의 마음으로 약자를 존중하고 동정하는 새로운 태도를 함양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각자가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권리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 빈첸시오회는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인종, 사회적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이해와 협력, 상호 애정을 증진시켜 전 인류의 평화와 일치에 기여한다.

해설 - 가난한 이들은 우리의 친구이다. 인종이나 건강 상태, 가난, 약점, 단점은 친구가 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 역시 우리의 형제 자매와 사랑스러운 친구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러한 존엄성을 지니고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한다.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하며 이해를 증진한다”: 오해를 받고 차별당하는 것 역시 가난의 한 심각한 형태이다. 이러한 차별은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고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며 취직의 기회를 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공감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7.8 빈첸시오회의 정치적 중립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Society)

빈첸시오회는 특정 정당의 정치 노선을 따르지 않으며 언제나 비폭력적인 자세를 취한다. 일부 회원이 정치적 사안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소명에 참여하는 것은 좋다. 다만 정치적 관직에 종사하는 회원들은 관직 임기 동안 빈첸시오회를 대표하는 어떠한 임무도 맡지 않아야 한다.

해설 - 빈첸시오회는 창립 때부터 그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계하지 않기 위해 극도의 주의를 기울였다. 심지어 각 협의회 내에서 정치적 대화가 오가는 것마저 금지했다. 물론 우리 빈첸시오회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이해하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회원들은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기간은 빈첸시오회의 대표직위를 양도하도록 요청받는다. 이는 분명히 모두가 환영하고 이해할만한 작은 희생이다. “애덕의 정신과 그리스도적 분별력은 우리의 모임에서 정치 토론을 하지 않게끔 한다.” (1835년 회칙, Perfectae Caritatis 28/10/1965)

7.9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Working with Communities)

빈첸시오회는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도 일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외되거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 공동체가 책임감과 연대 의식을 신장하게 되고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복지를 향상시킨다. 물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개인적 방문은 늘 지속되어야 한다.

해설 - 회칙과 해설에 자주 언급되듯이 단순한 개인적인 도움을 넘어 설 필요성은 늘 존재한다. 회칙1.10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 7.9에서는 회원들이 방문하는 어려운 지역 공동체에서 삶을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도와줄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회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를 인식하도록 돕고, 문제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여론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변화를 가져올 계획을 짜도록 도울 수 있다.

빈첸시오회의 어떠한 활동도 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고통받는 이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단순히 압력을 가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다. 빈첸시오회와 협의회는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 우리의 경험을 확장해야 한다.

★ 용어정리

Assemblies of the Council General : 총이사회 정기총회 (=Council General Assembly =General Assembly)

Assimilated Council : 통합이사회

Associated Council : 연합이사회

Basic Requirements for the Drafting of the Internal Statutes of the Superior, Assimilated or Associated Councils : 상급, 통합, 연합 이사회 내부규칙의 기본요건

Board Member : 임원

Board of the Council General : 총이사회 임원회

Confederation : 연맹

Conference : 협의회

Consultor : 자문위원

Coordinator : 조정관

Correspondent : 연락관 (=Territorial Correspondent:지역연락관)

Council General : 총이사회

Deputy Vice-Presidents General: 총이사회 부회장 대리

Dissolution : 해산

Electoral Board : 선거위원회

Financial Commission : 재정위원회

Governing Board : 집행임원회 (=Board of Directors)

Guest Participant : 참관인

Head Office : 본부

Internal Statutes : 내부규칙

International Commissions : 국제 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 있음)

International Service Structure : 국제조직 (= International Structure)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 총이사회 집행위원회

Meeting : 회합, 회의

Missionary Members : 특별임무회원

National Council : 국가이사회

Part : 부 (회칙과 정관은 3부로 이루어 짐)

Permanent Section : 상임집행부

President General : 총이사회 회장

Provisional Board : 임시임원회

Regional Meeting : 지역회의

Rule : 회칙

Secretariat : 사무국

Secretary General: 사무총장

Speaker : 의장

Statute : 정관

Superior Council : 상급이사회 (=National Council 국가이사회)

Temporary Members : 임시회원

Territorial Technical Liaison Officer : 지역기술연락관

Territorial Vice-President : 지역부회장

Treasurer General : 총이사회 재무관

Vice-President General : 총이사회 부회장

Vincentian family : 빈첸시오 가족

Work Center : 사무처

제2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국제 연맹의 정관

1. 연맹, 본부 및 회원

THE CONFEDERATION, HEAD OFFICE AND MEMBERS

1.1 연맹 (The Confederation)

국제적으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총이사회 회장이 주재하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국제 연맹(이하 "연맹"이라 규정)을 통해 영성과 관리의 일치를 이룬다.

해설 - UN을 위시한 다양한 국제 기구, 국가 기관들과 더욱 효과적인 공식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적법한 '연맹'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연맹의 법정 회원은 1.6에 명시되어 있다. 연맹은 현재 프랑스법 체계 내에 비정부기구(NGO)로 등록되었다. 비록 법적으로는 '연맹'이지만 여전히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가 본질적으로 전세계 공동체의 유일한 단 하나의 조직(one family)이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로 '연맹'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1.2 빈첸시오회의 명칭 (The Name of the Society)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국제 연맹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명칭의 유일한 소유권자이다. 오로지 총이사회만이 연맹을 대표하여 명칭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금할 수 있다.

1.3 국제 본부 (The International Head Office)

연맹의 국제 본부는 초대 협의회가 설립되었던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다.

본부는 총이사회 총회의 결의로 세계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 이 결의는 총회에 출석하거나 의사표명을 한 법정 구성원의 3분의 2의 찬성 표결로 채택된다.

이 결의가 총회에서 유효하게 채택되기 위해서는 본부 이전 문제가 미리 준비된 의제에 포함되어 총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해설 - 본부 이전은 이전의 회칙에서도 3분의 2의 다수결 표결로 가능했다.

우리가 국제적 조직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중앙 행정의 소재지가 로마 혹은 다른 대륙의 도시로 이전함이 바람직하거나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비용의 상세한 내역과 이전으로 예상되는 이득의 명시와 함께 총회 몇 달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파리는 빈첸시오회 역사와 함께 한 수많은 성지들로 인해 언제나 회원들의 중심 순례지로 인식될 것이다. 성지에는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과 빈첸시오 성인, 루이즈 드 마리악 성녀, 복자

로잘리 랑뒤 수녀 등의 무덤이 포함된다.

1.3.1 그 밖의 국제 연맹 사무처 (Other International Confederation Centers)

그 밖의 연맹 사무처가 전세계 다른 도시에 설립될 수 있다.

해설 - 빈첸시오회가 크게 확장하여 다른 사무처의 설립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총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세계 어느 곳이든 설립 가능하다. 파리에 살지 않는 총이사회 회장이 그의 거주지에 일정 보조 직원을 필요로 할 가능성도 있다.

1.4 공식 언어 (Official Language)

프랑스에서의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초대 협의회 창립을 인정하여 연맹의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연맹의 모든 공식 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될 것이다.

해설 - 공식문서의 초안부터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초안은 작성자의 모국어로 작성한 후 프랑스어로 번역한다.

1.4.1 그 밖의 공용 공식 언어 (Other Co-official Languages)

연맹의 공용 공식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이다. 연맹은 대부분의 문서를 모든 공용 공식 언어로 발표할 의무를 진다.

해설 - 빈첸시오회는 해설이 포함된 회칙과 정관 등의 핵심 문서들을 다른 언어로 발표하면서 새롭고 역동적인 가능성과 조우한다.

1.5 총이사회 (The Assembly of the Council General)

연맹의 최고 민주결정체는 총이사회이다. 총이사회는 총이사회 회장에 의해 주재되며 정기총회 또는 특별총회를 개최한다.

해설 - 총회(the General Assembly)는 빈첸시오회의 초기부터 연맹의 최고 회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1.6 법정 구성원 (Legal Members)

연맹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총이사회에 인준을 받은 각 상급(Superior) 혹은 통합(Assimilated) 이사회는 연맹 총이사회에 법정 구성원이다.

법정 구성원인 이들 이사회는 반드시 자국 법령에 의해 비영리기구로 설치되어야 하며, 총이사회에 의해 정식으로 인준 받아야 한다.

비록 우리 회의 전통은 “상급이사회”라는 용어를 선호하여 정관에서 정식으로 채택하였지만 법률 제정시 특별 조항 혹은 그 외의 특정한 상황에서 “국가이사회”(National Council)라는 용어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 위 조항에서 “법정 구성원”의 명시는 빈첸시오회가 프랑스 법에 의해 법인으로 등록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법인으로 등록하면 빈첸시오회의 법적 지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다. 정관은 오래 전에 쓰였던 “상급”이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한다. 사실 빈첸시오회의 초기부터 ‘상급’이라는 용어는 한 국가의 최고 대표지위를 규정하였다. ‘상급’은 각 회원과 협의회와 이사회들을 섬기는 데 있어 더 많이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무에 있어서도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용어를 다시 사용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정관이 권장하는 대로 협의회들을 조정하는 이러한 종류의 이사회가 국가 차원을 넘어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접한 두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강한 상호 협력의 유대로서 같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정관 1.8 참조)

둘째 ‘국가’라는 용어(the term ‘national’)는 그 의미의 협소함으로 인해 빈첸시오회가 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국수주의(nationalism)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하도록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결하였다.

만약 ‘국가이사회’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면 자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빈첸시오회의 문건에서 ‘상급 이사회’ 대신 ‘국가이사회’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1.6.1 총이사회의 구성원 (Representatives on the Council)

총이사회는 세계 각국과 명확히 확정(defined)된 지역에서 설립된 상급 및 통합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선출된 회장들로 구성된다.

해설 - “정식으로 선출된”: 비밀투표 및 ‘상급, 통합 혹은 연합 이사회 내부규칙의 기본요건’ 제11조의 조건에 합당한 방법을 의미한다.

“명확히 확정(defined)된 지역” – 정관 1.8의 해설을 참조한다.

1.6.2 통합이사회의 정의 (Definition of Assimilated Councils)

통합이사회란 상급이사회가 설립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 총회장의 인준을 받은 이사회

혹은 협의회로서 자국 법령 체계 내에서 비영리기구로 합법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해설 - “통합이사회”가 그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는 의도는 아니다. 상급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을 때까지 협의회와 이사회가 회원과 조직을 꾸준하고 신중히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가능한 모든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이 발전 과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빈첸시오회의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혹은 협의회”: 한 국가가 하나 혹은 몇 개의 협의회로 구성되어 매우 적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국 법령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하다면, 총회에서 대표의 자격으로 같은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빈첸시오회의의 훌륭한 전통이다. 회원수는 작아도 그 정신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귀한 것이다.

자국 법령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연합이사회(Associated Council)는 발언권은 지니나 투표권은 없다. (정관 1.10, 1.11 참조) 다만 총이사회 회장 선거(3.3)와 자국 회장이 참석하고 연맹의 집행임원회(5.2.1)의 자격으로 소집되지 않은 상임집행부(Permanent Section)에서는 투표권을 갖는다.

1.7 연맹에의 가입 (Affiliation to the Confederation)

1.10.1에 명시된 세계 각국의 상급, 통합, 혹은 연합 이사회가 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면 서면으로 이를 요청하고 신청서를 연맹의 총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 신규 회원의 가입 신청서 양식은 총이사회 본부에 비치한다.

1.7.1 가입 요건 (Requirements for the Affiliation)

상기의 서면 가입 신청서에서 해당 이사회는 자국 법령에 의하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국제 정관 1.6이 충족됨을 반드시 밝히고, 해당 이사회가 담당하는 지역을 명시한다.

또한 해당 이사회는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회칙과 정관을 전면 수용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1)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칙 (The Rule of the Society of St. Vincent de Paul);
- 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정관 (The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the Society of St. Vincent de Paul);
- 3) 상급, 통합 혹은 연합 이사회 내부규칙의 기본요건 (The Basic Requirements for Drafting the Internal Statutes for Superior, Assimilated or Associated Councils).

해설 - 빈첸시오회의의 회칙과 정관의 근본방침을 채택하고 수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세계에서 같은 가치규범으로 통일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의 정체성이 분명해 진다.

1.7.2 법적 책임 (Legal Liability)

상기 진술된 가입의 효력으로 인해, 연맹 혹은 연맹 운영회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졌다는 확증이 없다면 그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급, 통합, 연합 이사회는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일에 관한 모든 법적 문제에 있어서, 해당되는 국가적 또는 국제적 관할권에서 최종 책임을 진다.

해설 - 본 조항은 법적 필요에 의해 삽입되었다. '상급, 통합 혹은 연합 이사회 내부규칙의 기본요건' 제18조에서도 다른 이사회가 책임져야 할 불필요하고 부당한 소송으로부터 총이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비슷한 규정이 삽입되어 있다.

1.8 상급이사회의 설립 (Institution of Superior Councils)

회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더 나은 편의를 위해서 정관 1.9에 따라 한나라 안에 둘 이상의 상급이사회가 설립될 수 있다.

해설 - "회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더 나은 편의":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이 두 조건은 정관1.8과 1.9에 명기된 다른 조건들과 함께 아주 중요하다. 우리 조직의 이론과 구조는 우리의 사명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잘 봉사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성령께 인도를 구하는 지속적인 기도 역시 핵심적인 사항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아래와 같이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 a) 한 국가에 단 하나의 상급이사회
- b) 한 국가 이상이 포함된 한 지역에 단 하나의 상급이사회
- c) 국경을 초월한 단 하나의 상급이사회 (정관1.9.2 참조)
- d) 빈첸시오회의의 회원수가 많은 한 국가에 하나 이상의 상급이사회

이 선택은 기존 상급이사회의 요청에 의해서만 원용될 수 있다. 우리 회의 일치와 조화는 매우 중요하므로 총이사회는 새로운 이사회 설립에 따라 예상되는 불화의 위험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제거해야 한다. 한 국가 안에서 두 상급이사회가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국가와 그 국가의 교계제도는 자국 내에서 두 종류의 정책이 시행되고, 두 이사회가 대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소지 또한 해결해야 한다.

1.8.1 조건 (The Conditions)

한 국가에 둘 이상의 상급이사회가 설립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들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a) 관할 지역의 크기 (Excessive territorial scope)
- b) 통신의 어려움 정도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 c) 협의회와 이사회 수 (Large number of Conferences and Councils)
- d) 회원과 다양한 특별 사업의 수 (Large number of members and Special Works)

1.9 새로운 상급이사회의 설립 절차

(Procedures for Instituting New Superior Councils)

상급이사회가 이미 존재하는 국가에 새로운 상급이사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들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9.1 상급이사회의 요청에 따른 설립

(Establishment on the Request of a Superior Council)

- a) 요청 당사자인 상급 혹은 통합 이사회의 해당 국가에 3,000개 이상의 협의회 존재
- b) 새로 설립되는 이사회는 1,000개 이상의 협의회 포함
- c) 요청 당사자는 새로운 상급이사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기존의 상급이사회
- d) 해당 국가의 법령이 그 국가 내에 다른 관할권을 지니는 두 개의 상급이사회 설립을 허가
- e) 지역부회장(Territorial Vice-President)의 호의적 보고
- f) 상임집행부(Permanent Section)를 통한 총이사회의 명시적 허가

1.9.2 공식요청에 따른 설립

(Institution Following an Official Request)

총이사회는 사회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이유 혹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상임집행부를 통해 문제가 되는 국가의 국경에 관계없이 특정 지역에 상급 혹은 통합 이사회를 공식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사회의 설립이 정관1.6에 따라 연맹을 정식으로 구성하고 있는 기존 상급이사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기존 이사회는 먼저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문 의무는 총이사회 상임집행부에게 있다.

해설 - 국제정관은 가난한 사람들과 회원들에게 더 나은 봉사를 베풀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관은 필요한 보장조항을 삽입해서 해로운 결정을 피하고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10 그 밖의 총이사회 구성원

(Other Members of the Council General)

상황에 따라 총이사회에 또 다른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분류를 따른다.

1.10.1 연합이사회 (Associated Councils)

연합이사회란 자국법상의 제약으로 완전한 비영리 법인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정관 1.6에 규정된 방식 이외의 법적 방법을 이용하여 법정 구성원이 된 경우에 총이사회에서 온전한 법정 구성원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이사회를 칭한다.

해설 - 일부 국가에서는 빈첸시오회가 자선 업무를 눈에 띄지 않게 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협의회에 속하는 것 자체가 위험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연합이사회”가 창설된다. 또한 협의회가 교회에 의해서만 승인되고 민사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국 이사회의 내부규칙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항들을 만든다.

1.10.2 임시회원 (Temporary Members)

임시 회원은 빈첸시오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국가 혹은 지역에서 총이사회 회장에 의해 선임된 회원들이며, 해당 지역에 상급 혹은 통합 이사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속한다.

정관 6.5에 따라 총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임시 상급이사회 회장도 임시회원이다.

해설 - 이 조항은 빈첸시오회의 창설과 성장이 힘겹게 이루어지는 (1.6.2 해설 참조) 국가의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는 총이사회 회장의 재량권에 따르며 협의회의 확산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

1.10.3 임무회원 (Missionary Members)

총회장은 특정 임무와 봉사를 수행하기 위한 회원들을 지명한다. 임무회원은 역대 국제 총회장을 역임했던 회원을 포함한다.

해설 - “임무회원”: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갖는다.

“국제 총회장”: 빈첸시오회의 총회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을 것이다. 그들을 총회에 참석하도록 초청해서 발언권을 주고 회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은 빈첸시오의 관습이며 정신이다.

민주주의와 제한된 임기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빈첸시오회를 활기있게 만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높여주며, 변화하는 필요에 잘 적응하게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경험이 사장되고 조직의 성격을 전혀 다르게 바꿀 위험이 있으며 미래를 향한 최선의 길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 조항은 총회에서 이런 단점이 최소화되도록 한 다. 따라서 이사회 수준에서, 회장이 한 명 이상의 전임 회장과 특출한 능력을 지닌 한 두 회원에게 중요 회의시에 대화나 서신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내부규칙을 만들기를 권고한다.

이 제도가 빈첸시오회에 확실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문과정을 신속히 하여 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장은 우정어린 친밀함 속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고르도록 한다. 자문위원들은 경험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일정한 자격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일상화된 기도를 통해 얻은 지혜, 겸손함(선출된 회장이 내리는 결정에 기여하고 지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새로운 사고와 방법에 기꺼이 마음을 여는 개방성, 그리고 충실함이다. 충실함이란 비록

제1부 빈첸시오의 소명

자문위원 자신이라면 내리지 않았을 결정이라도 한번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긍정적인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소수의 자문위원들을 지명함으로써 장년층의 경륜과 젊은 회원들의 역동적인 리더십이 효과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장은 봉사하는 지도자로서 회원들의 “타고난 재능과 영적 은사”를 발견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빈첸시오회를 위한 봉사”에 쓰이도록 하라는 회칙3.11의 이상을 반영할 수 있다.

1.11 표결권없는 발언권 (Right to Speak but Not to Vote)

상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총이사회의 그 밖의 모든 구성원들인 연합이사회, 임시회원, 임무회원은 발언권은 가지만 총이사회 회의에서 표결권은 없다.

해설 - 1.6.2 해설의 예외를 참조한다.

1.12 관련된 특별사업 (Related Special Works)

빈첸시오회와 관련된 특별사업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와 상황에 빈첸시오회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가 이러한 특별사업의 전 단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특별사업이 다수의 빈첸시오회 회원에 의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해설 - “관리”(control): 이 의미는 특별사업을 운영하는 운용 위원회나 협의회 표결 회원의 다수가 현재 활동하는 빈첸시오회 회원이라는 뜻이다. 다른 기구와 협력하고자 하는 빈첸시오회 회원이 운용 위원회에 참가하기는 하나 표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업은 특별사업이 아닌 특별활동(Special Activities)에 불과하다. 특별활동은 빈첸시오회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으며 회칙 3.14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12.1 빈첸시오회 로고의 사용 (Use of the Society's Logos)

상기 해설에 따라 모든 상급 및 통합 이사회는 각자의 관할권 범위 안에서 빈첸시오회 로고의 사용을 허가한다.

해설 - 상급 및 통합 이사회는 로고 사용의 허가를 내줄 때 특별히 더 신중해야 한다.

1.12.2 직원 (Employees)

특별사업의 직원과 연맹의 일반적인 직원들은 빈첸시오회의 이사회에서 직위를 가지지 못한다. 다만 직원 자신이 근무하는 특별사업이나 이사회의 기술 및 행정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설 - 이 조항은 빈첸시오회의 자발적인 특성과 이윤추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조항이다.

“예외”: 직원들은 참석을 부탁 받은 경우 이사회 모임에 참석해서 보고를 할 수 있고 그들 업무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할 수도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상급, 통합, 연합 이사회 내부규칙의 기본요건 제12조 참조)

2. 총이사회 정기총회

THE COUNCIL GENERAL ASSEMBLY

2.1 연맹의 정기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onfederation)

연맹의 최고 기관은 총이사회로서, 총이사회는 정관 1.5에 의거하여 총회를 개최한다.

법정 구성원인 상급이사회와 통합이사회는 각각 한 표의 표결권을 행사한다. 총이사회 회장도 마찬가지로 한 표를 행사하며, 총회장의 투표는 상황에 따라 결정권(casting vote)으로 간주된다.

해설 - “상황에 따라”: 찬부 동수인 상황을 의미하며 이 경우, 이미 행사한 총이사회 회장의 투표가 최종 결과를 결정한다.

2.1.1 정족수와 표결 (Quorum and Voting)

총회의 결의문을 유효하게 채택하기 위해서 재적 구성원의 30% 이상의 출석 내지 출석 위임을 필요로 한다. 2차 투표가 필요한 경우 24시간 후에 행해지며, 이 때는 참석하거나 의사표명을 한 구성원의 비율에 상관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결의는 단순 과반수로 한다.

해설 - “재적 구성원”이란 정관1.6에 규정된 “법정 구성원”을 의미한다.

“30% 이상”: 빈첸시오회의 형제적이며 민주적인 정신으로 인해 재적의 30%보다 훨씬 많은 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표결권이 없는 연합이사회 회장들도 많이 참석하도록 한다. 부유한 국가의 이사회에게 필요한 재정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차 투표”: 이 문구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때 후일 다시 모여서 결정해야 하는 비경제성을 제거했다.

“결의”: 단순과반수 이상을 요구하는 결의는 회칙과 정관의 개정(7.3 참조)과 본부 이전(1.3 참조)에 관련된 것이다. 1.11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이 없는 구성원을 명기하고 있다.

2.2 정기총회의 주기 (Frequency of Assembly Meetings)

총이사회 정기총회는 6년에 한 번씩 개최한다.

2.2.1 총이사회 특별총회 (Extraordinary General Assemblies)

총이사회는 적절한 경우 특별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특별총회는 총이사회 법정 구성원의 50% 이상이 요청할 시 소집한다.

해설 - 모든 민주적 기구는 법정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로 특별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적절하다면 상급, 통합 및 연합 이사회의 내부규칙에도 이런 조항을 삽입하도록 한다.

2.3 참가자 (Participants)

정기총회에는 정관 1.6, 1.10.1, 1.10.2, 1.10.3에 명시된 이사회의 대표들이 상기 조항에 의한 권한으로 참가한다.

해설 - 상급, 통합 및 연합 이사회 자격의 참가자 외에 임시회원과 임무회원도 참가한다.

2.4 의제 (Agenda)

총회의 의제와 총회의 소집 공고는 총이사회 회장의 동의하에 사무총장(General Secretary)에 의해 결정되며, 상기 공고를 전달받은 각국 이사회들이 제안한 의제도 고려한다.

해설 - 협의회가 전세계에 걸쳐 있고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나 상이하므로 총회에서는 진정한 빈첸시오 정신이 담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이사회의 제안을 수령하여 중요한 의제의 핵심 논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2.5 기도와 묵상 (Prayers and Meditation)

빈첸시오회의의 전통에 따라 회의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기도에는 영적 독서나 묵상도 포함되며 짧은 나눔도 가능하다. 영적 독서는 국제영적지도자에 의해 준비된다. 참석자들은 비밀 헌금을 낸다.

해설 - 총이사회 회의 본회의는 운영 철학과 기능 면에서 빈첸시오회의의 여느 협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절친한 친구들처럼 세계 각국에서 모인 총이사회 구성원들은 총회의에 모여 공동의 기도와 묵상을 바치며 형제적 그룹을 형성한다. 총회는 곧 단일한 거대 협의회(one very large Conference)의 일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협의회에서 기도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헌금은 여타 협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눔과 참여의 표시이다.

3. 총이사회 회장, 총이사회 임원, 국제 조직

THE PRESIDENT GENERAL, THE BOARD OF THE COUNCIL GENERAL, AND THE INTERNATIONAL SERVICE STRUCTURE

3.1 총이사회 회장 (The President General)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국제 연맹 회장과 총이사회는 교황청과 모든 국제적 종교 단체 또는

제1부 빈첸시오의 소명

민간 기구, 모든 공적 또는 사적 기구 앞에서 빈첸시오회를 대표한다.

초대 협의회의 창립 때부터 총이사회의 정기총회가 조직되지 않았던 시기 동안 총이사회 회장은 빈첸시오회의 일치의 유대와 도덕적 권위를 대표해왔다.

총이사회 회장은 전세계에 널리 퍼진 빈첸시오회의 일치를 구현(personify)한다.

해설 - “빈첸시오회를 대표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총이사회 회장이 국제적 차원에서 빈첸시오회를 대표한다는 의미이지만, 상황에 따라 빈첸시오회를 다른 차원에서 대표할 필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상급, 통합, 연합 이사회의 회장들은 각 이사회의 관할 지역 내에서 빈첸시오회를 대표한다.

“교황청 앞에”: 총이사회 회장이 교황님께 빈첸시오 회원들의 애정과 기도를 전하며 빈첸시오회 사업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관례화되어 있다.

“기구”: 관행상 총이사회 회장은 풍부한 지식과 오랜 경험을 지닌 회원을 국제기구에 빈첸시오회 대표로 파견한다.

“도덕적 권위”: 총이사회 회장 선출시, 회원들은 성령님께 새로 뽑힐 총회장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빈첸시오회에 독자적인 공헌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 투표한다.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항상 이 관행을 지킨다. 회원들은 총회장이 빈첸시오회를 겸손한 봉사의 정신으로 이끌 무거운 책임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여, 총회장이 견해를 밝히거나 성령의 빛과 빈첸시오회의 전통에 비추어 적절한 협의 후에 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애정과 성실로서 이에 응답한다.

“구현한다”: 특히 총회장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총회장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존재이다. 그는 선출된 수장으로 빈첸시오회의 일치를 몸소 구현하고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일치는 빈첸시오회가 그리스도 사랑의 표징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화해와 협력의 정신은 불가결하다.

3.2 총이사회 회장의 역할

(The Functions of the President General)

총이사회 회장은 국제조직의 지원을 받아서 빈첸시오회의 세계적 활동을 감독하고 촉진하며 조정한다. 이를 위해 총이사회 회장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내리고, 회칙과 국제정관 및 빈첸시오회의 전통을 따르면서 총회의 결의를 실행한다.

해설 - 빈첸시오회는 총이사회 회장에게 폭넓은 결정권을 준다. 총회장의 주요 결정사항은 국제조직의 임원 지명, 빈첸시오회 보호를 위한 개입, 그리고 총회 결의의 실행 방안이다. 결정은

제1부 빈첸시안의 소명

기도와 자문 후에 이루어진다.

3.2.1 빈첸시오회 발전에 관한 보고서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Society)

매년 1월 총이사회 회장은 모든 회원들과 이사회들의 정보습득을 위해, 빈첸시오회의 전년도 진척사항과 미래의 전망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한다.

해설 - 빈첸시오회의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총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한다”는 표현은 총회장의 책임을 명시한 것일 뿐이다. 이 보고서는 가능한 한 널리 배포되어야 한다. 매년 상반기에 소집되는 국제집행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힌다.

빈첸시오회의 초기부터 총회장이 회람을 통해 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빈첸시오회 정신이나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관행들, 또는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은 회의 전통이 되어 왔다. 이러한 회람은 빈첸시오회의 풍요로운 유산의 일부를 형성하며, 오래된 회람의 대부분은 아직도 유효하며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부여한다. 모든 회원들은 핵심 회람들을 읽어보도록 한다.

3.3 총이사회 회장의 선거 (Election of the President General)

총이사회 회장은 모든 회원을 대표하는 상급, 통합, 연합 이사회의 회장들에 의해 선출된다.

해설 - “모든 회원을 대표”: 회장들은 선거에 대해 회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회원들이 최대한 선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비록 회원들이 후보자 개인을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총회장이 지녀야 할 자질 등을 지적할 수는 있다. 회원들의 견해를 마음에 새기며 성령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친 후, 회장들은 가난한 이를 위한 빈첸시오회의 사명과 회원들의 영적 발전, 빈첸시오회의 단결과 기구의 효율성을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고, 빈첸시오 가족(Vincentian family)과 교회와의 관계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민간 사회와 보다 유익한 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한다. (이러한 기준은 회칙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연합이사회의 회장은 평상시 발언권만 지니며 표결권은 없으나 총회장 선거에서는 표결권을 가진다.

회원들이 회장 선출 과정에 보다 긴밀하게 참여한다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선출 과정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3.4 임기 (Duration of the Term of Office)

총이사회 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해설 - 다른 이사회와 협의회의 회장 임기는 이보다 짧다. (상급, 통합 혹은 연합이사회 내부규칙의 기본요건 제11조 참조) 총이사회 회장의 경우에 예외를 두는 이유는 총이사회 회장의 임무가 방대하고 국제적 사업의 소요기간이 국가규모의 사업보다 대체로 더 길기 때문이다. 총이사회

회장에게 핵심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빈첸시오회를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총회장도 다른 회장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역할을 명예직이 아닌 봉사직으로 간주한다.

총회장은 회장직에 집착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필리 2:3: 로마 12:10)라는 성경 말씀을 기 억한다.

총회장은 적절한 재능과 영적 은사를 가진 회원을 국제조직의 적절한 직위에 임명할 필요를 인식하여 후임자가 업무에 최대한 준비되어 있도록 한다. 재선출은 흔치 않으며 보통 6년 임기로 회장직을 마친다.

3.5 연령 제한 (Age Limit)

총이사회 회장은 선출시 65세 이하여야 한다.

해설 - 이 조항은 총회장이 적어도 15년의 경험(3.7 참조)과 충분한 활력을 지녀야 한다는 총회의 견해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초대 빈첸시오회에서 젊은이들이 수행했던 역할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젊은 회원들에게 임직을 주어 빈첸시오회 전체에 '젊음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경험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젊은 회장은 나이 많은 회원에게 자문위원(1.10.3 해설 참조) 등의 직위를 주어 경험의 지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총이사회는 연령 제한 조항을 두는 것이 프랑스에서는 합법이지만, 다른 나라의 법령 체계 내에서는 수락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

3.6 선출 절차 및 기한 (Election Procedure and Deadlines)

기존 총이사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총이사회 회장이 선출되어야 할 경우, 총이사회 부회장은 적어도 선거일 10개월 전에 이를 총이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총이사회 구성원들은 다른 회원들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해설 - 3.3의 해설에 따라서 이 공지를 회원들과 협의회에게 널리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3.6.1 선거위원회 (Electoral Board)

총이사회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총이사회 재무관이 총회장 후보자가 아닌 한 선거위원회를 함께 구성하며 총이사회 부회장에 의해 주재된다. 상기의 3명 중 후보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 대신 총이사회회의 다른 법정 구성원으로 교체한다.

해설 - 선거위원의 교체 경우, 총회장이 교체 회원을 지명한다.

3.7 후보 추천, 형식 및 제한

(Presentation of Candidates, Forms and Limitations)

선거가 공고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이사회 구성원은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입회한 지 15년이 넘고 연맹이나 특별사업에서 보수를 받는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원 중 적합하고 훌륭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해설 - 최소한의 경험 기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 빈첸시오회의 자발적인 성격은 유지된다.

총이사회에 의한 후보자 추천이 임기를 마쳐가는 총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1차 투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관 3.4에서 규정된 예외적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기존 총회장의 재지명을 지원하는 많은 이사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3.8 후보자 공표 (Announcement of Candidates)

총부회장은 적어도 총이사회 정기총회의 3개월 전에 필요 요건을 충족한 후보를 공표한다. 총부회장은 후보자의 후보 수락을 확인한다.

후보자 공표시 후보자의 빈첸시오회 활동을 간략히 담은 이력서와 후보자의 공약을 두 장 이내로 발표한다.

3.9 선거 시기와 형식 (Time and Form of Election)

새로운 총회장은 총회장 선거와 그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소집된 정기총회 혹은 특별총회를 통해 선출된다.

3.9.1 선거 정족수 (Quorum for Election)

총회가 새로운 총회장을 유효하게 선출하기 위해서는 정관 3.3에 의해 표결권을 가진 구성원의 30% 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3.9.2 표결 절차 (Voting Procedure)

표결 절차는 2차로 구성되며 비밀 투표로 실행된다. 1차 투표에서는 부재자의 우편 투표를 포함한다. 후보자 중 어느 한 명도 총 투표수의 절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할 경우 2차 표결 절차가 시작되며 이 때 후보자는 1차에서 최고 득표를 한 2명으로 구성된다. 시간 제약상 2차의 투표는 우편 투표 없이 바로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해 실시된다.

표결은 표결 의제가 포함된 총회의 첫날 오후에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사항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해설 - 2차 투표시 후보자들을 두 명의 후보자로 압축하는 목적은 선출된 총이사회 회장이 확실한 다수표를 획득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상급, 통합, 연합 이사회의 내부규칙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제1부 빈첸시오의 소명

권장된다.

3.9.2.1 제한 (Limitation)

만약 기존 총이사회 회장이 연임에 추천된 경우, 1차 투표에서 후보자 중 어느 누구도 절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고 2차 투표가 실시될 때에 기존 총회장의 선출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2차 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획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결 절차는 24시간 후에 기존 총회장을 배제하고 다른 추천 후보자들로 다시 시작한다.

해설 - 이 조항은 정관3.4와 관련되어 있다. 임기가 끝나가는 총회장을 재선출할 때의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예외를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하는 데 있다. 일반적 선거에서 무효표는 과반수를 결정할 때 합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총회장이 후보자 중 한 명이라면 무효표를 포함한 총 투표 중에서 50%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3.9.3 취임 (Taking of Office)

총이사회 회장은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 축일, 즉 9월 9일 파리에서 취임한다.

해설 - 빈첸시오회가 파리에서 창립되었으므로 총회장은 언제나 파리에서 취임한다. 과거에는 빈첸시오 아 바오로 성인의 축일에 취임하였으나, 현재는 빈첸시오회 창립자 중 한 명인 오자남이 시복됨에 따라 총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오자남의 축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3.10 직무 종료 (Termination of Functions)

총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지할 수 있다.

- a)임기 종료
- b)연임되지 않음
- c)총2회의 연임 완료
- d)임기 중 사임
- e)부적격
- f)사망
- g)민권 상실

해설 - g)호는 과거 한 번도 원용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처럼 광범위한 기구는 반드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이처럼 있을 법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3.11 직무로부터 사임 (Resignation from Service)

총회장이 사임하는 경우, 사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 4.1에 따라 국제집행위원회에 정식으로 사임을 표명 해야 하며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 총회장직에서 사임을 요청하는 것은 겸양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제집행위원회가 총회장에게 더 큰 지원을 보장해서 회장직을 해나가도록 설득할 수 있다. 그러나 겸양의 표현이 아닌 경우에는 사임을 수락하는 것이 적절하다.

3.12 부적격 (Incapacity)

총이사회 회장의 부적격이 업무를 방해한다면 임원들, 즉 총이사회 부회장, 사무총장, 총이사회 재무관은 국제집행위원회만의 특별회의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 회의는 최대 30일 동안 개최된다.

이 회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제4조3항에 명시된 구성원의 30%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해설 - 민주적으로 선출된 회장들이 표결권을 갖고 있는 국제집행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에 가장 적절하다.

부적격은 병력(病歷), 개인 상황에 따른 시간부족, 봉사 지도자로서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적 정신의 부족, 또는 역할에 걸맞지 않는 불충분한 능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상급, 통합, 연합 이사회의 내부규칙에 비슷한 조항을 삽입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3.12.1 부적격 심사 (Consideration of Incapacity)

국제집행위원회는 의제에 오른 이 사항만을 다루기 위한 특별 긴급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총회장의 부적격 사유가 총이사회 임원이 제출한 자료에 충분히 근거되고 입각한 것인지를 애덕과 겸양의 정신으로 조사한다. 위원회의 소집부터 결정시까지 그 어떠한 빈첸시오회의 국제적 사업도 정지, 교체, 취소되지 않도록 한다.

해설 -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엄밀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증거를 참고하여 최대한 빠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원들은 국제 집행 위원회에 부적격 신고 요청서와 해당 참고 자료를 제출한다.

“애덕”: 특히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는 우리가 방문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는 공감과 감수성을 다른 회원들에게 갖도록 한다.

“정지되지 않도록 (no office suspended)”: 빈첸시오회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총이사회 회장도 국제집행위원회가 결정할 때까지 계속 직위를 유지한다. 이는 바로 철저한 민주주의다.

3.13 부적격에 관한 결정

(Guaranteeing the Decision about Incapacity)

부적격 심사 결과가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제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제1부 빈첸시오의 소명

출석하고 의사표명을 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위원회 회의의 세부 사항을 즉시 기록한다. 특수한 경우에 이러한 기록은 전 참석자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해설 - “3분의2”는 이 결정의 중요한 특성을 반영한다. “3분의 2”라는 정족수는 오직 회칙과 정관의 개정 및 본부 이전 결의에만 요구되는 것이다. (두 경우 다 총회 결정에 의한다.)

3.14 총이사회 회장직의 대행

(Replacement of the General President)

총이사회 회장의 임무와 직무의 종료가 예견되는 상황에는 총이사회 부회장이 빈첸시오회의 국제 관리를 대행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총이사회 부회장은 총이사회 회장 임무 종료의 결과를 총이사회의 구성원에게 공지하며, 특히 총회장의 부적격이 문제된 경우에는 총회장 본인에게 반드시 통보한다.

해설 - 빈첸시오회가 이러한 예외적인 사태에 직면했을 때, 총회장의 교체 결정을 요구하는 빈첸시오회와 회원들의 고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총부회장은 애덕의 마음으로 사태를 수습한다.

3.15 총회장의 사임 혹은 자격 상실시 새로운 총회장 선출 기한(Deadlines for the Election of a New President General in the event of Resignation or Incapacity)

총회장의 사임 혹은 자격 상실의 경우 최대한 90일 내에 총부회장은 정관 3.3과 3.10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해설 - 3.10에 언급된 다른 사태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3.16 총이사회 임원

(The Board Members of the Council General)

총이사회 회장은 적절한 심사 후에 총이사회 부회장, 사무총장, 총이사회 재무관을 연임가능한 일정 기간의 임기로 임명한다. 이들은 총회장과 함께 연맹 총이사회의 임원이며, 총회장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정관 제7조4항에 기술된 역할을 수행한다.

총이사회 회장은 임원회의를 주재한다. 본 정관 3.16에서 18에 걸쳐 언급되는 모든 임원에게 임원회의의 표결권이 부여되나 영적지도자는 제외한다. 임원회의의 결의 사항은 의사정족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순 과반수로 채택된다.

해설 - “연임가능한 일정 기간의 임기”: 이런 형태의 지명이 갖는 장점은 필요한 경우 임원의 변화가 훨씬 조화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3.16.1 임원회의의 임무 (The Board's Mission)

임원회는 총이사회 회장과 협력하여 총이사회 회의에서 채택한 협정과 국제집행이사회의 권고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또한 임원회는 총이사회 회장과 협력하여 총이사회 정기총회와 국제집행이사회에 제출할 전략을 구상한다.

임원회는 총회장과 가장 가까운 빈첸시오회 기관으로서 모든 사안에 대해 총회장에게 조언하고 자문한다.

총회장은 국제집행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기간 사이에 1년에 3번 이상 임원회의의 자문을 받는다.

해설 - 임원회가 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데 비해, 상임집행부는 주로 빈첸시오회의의 구체적인 방책과 일상의 업무를 관리한다. 빈첸시오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총회장은 임원회나 국제집행위원회에 의해 분기별로 행해지는 자문을 통해 어려운 임무 수행에 있어서 노련한 빈첸시오회 회원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임원들이 회의를 위해 장거리 여행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전화 회의"를 통한 자문도 가능하다.

3.16.2 국제 영적지도자 (The International Spiritual Adviser)

국제 영적지도자는 총이사회 임원회의의 구성원에 속하며 발언권은 가지나 표결권은 없다. 영적지도자는 총회장에 의해 지명되며, 교계의 직접적 상관(his direct superior)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해설 - 우리는 평신도 조직이므로 교회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으며 총이사회 회장의 영적지도자 선택도 자유롭다. 그러나 총회장이 영적 지도자를 임명할 때는 당연히 영적지도자의 교계 상관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을 가진 영적지도자가 임원에 포함되는 것은 영적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빈첸시오회는 창립때부터 민법상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여 구체적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가 더 용이하도록 했다. 그렇다고 해서 회원들이 각자의 개인적 삶과 빈첸시오회 사도직 안에서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깊이 유념해야 할 영적 필요성을 잊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총이사회 회장과 총이사회 임원들이 가톨릭 사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러한 과정은 보다 쉬워지고 그리스도 정신(Christian morality)을 언제나 잊지 않게 될 것이다.

3.16.3 국제 청년대표 (The International Youth Delegate)

국제 청년대표로 선임된 회원은 언제나 총이사회의 일원을 구성한다.

해설 - 이 조항은 빈첸시오회가 청년들에게 대해 느끼는 특별한 애정을 담고 있으며, 재능있는

제1부 빈첸시안의 소명

젊은이들에게 높은 직위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부여해 그들이 빈첸시오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빈첸시오회의 창립자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강인하였는지 새삼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 국제청년대표로서의 경험을 해 본 청년들은 미래에 빈첸시오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급, 통합, 연합 이사회도 각기 활용할 수 있도록 본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내부규칙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한다.

3.16.4 그 밖의 임원 (Other Board Members)

임원회의 필요에 따라 총이사회 부회장 대리, 사무총장 대리, 총이사회 재무관 대리 등이 임명될 수 있다.

3.17 총이사회 부회장 (The Vice-President General)

국제 총이사회 부회장은 총이사회 회장이 궐위되거나 불참하거나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총이사회 회장의 모든 기능을 대표한다.

해설 - 이는 빈첸시오회의 전통으로 모든 빈첸시오회에 적용된다. 총이사회 회장이 불참한 경우, 특히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경우 총이사회 부회장은 총이사회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여 이사회와 연맹이 지도력을 잃지 않고 계속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이 조항은 총이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17.1 특별 임무 (The Special Mission)

총이사회 부회장은 총이사회 회장의 궐위시에 정관 3.6과 이하 조항의 내용을 따라 새로운 총이사회 회장의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를 조직하며 선거 결과를 공표하고 빈첸시오회에 알릴 책임을 진다.

해설 - 총이사회 부회장은 부회장 고유의 직무 및 총이사회 회장에 의해 부여된 임무에 더해, 새로운 총이사회 회장의 선출을 담당한다.

3.18 총이사회 부회장 대리 (Deputy Vice-Presidents General)

필요한 경우 빈첸시오회의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특정 분야를 위해 총이사회 회장은 총이사회 부회장 대리를 지명해 일정한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총이사회 부회장 대리는 자동적으로 총이사회 임원회의 일원이 된다.

해설 - 이 조항은 회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협력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정관 3.1과 3.2이 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 조항은 필요한 경우 그러한 직무와 권한의 일정 부분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총이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회원에게 위임된 막중한 의무 때문에 총이사회 회장은 그의 의무의 일부를 가까운 협력자에게 위임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 총이사회 회장은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지 매순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3.19 사무총장의 역할 (The Secretary General: Functions)

사무총장은 총이사회 회장의 권한 아래에서 총이사회에 보고하는 세계 도처 기관의 업무와 각종 행정적 업무의 원활한 흐름을 보좌한다. 사무총장은 총이사회 총회의의 일정을 준비하고 의제를 선정하며 의사록 초안을 작성한다. 사무총장은 국제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부, 임원회에서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상임집행부와 각종 이사회 및 협의회간의 정례적 관계를 관장한다.

사무총장은 가능하면 사무총장 대리의 도움을 받아 총이사회 기록을 담당한다.

해설 - "의제의 선정": 이는 참석자와의 사전 협의도 포함한다. (2.4 및 4.5.1 참조)

3.19.1 연례 보고서 (Annual Report)

매년 7월, 사무총장은 상급이사회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빈첸시오회의의 세계적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다. 발행된 보고서를 빈첸시오회 내부와 외부에 배포한다.

해설 - "외부에 배포": 빈첸시오회의의 검양을 오해하여 빈첸시오회가 외부적으로 아무 것도 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소지가 있다. 그런 경우, 결과적으로 일반인들은 우리 회를 '비밀 조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यो 빛이심을 알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 5,15-16)

우리는 빈첸시오회의의 활동을 홍보하여야 한다. 회원들이 개인적 명성을 추구한 적이 없었을지라도 홍보과정에서 회원들의 이름이 언론에 공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과장 홍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진실만으로 충분하다.

이 연례 보고서에 빈첸시오회의의 모든 행사, 활동, 통계 및 감화를 주는 일화 등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담아 빈첸시오회의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 발행하도록 한다. 이를 공표함으로써 '복음 전파'라는 주목적을 달성하고 언론의 홍보효과를 통해 새로운 회원이 빈첸시오회를 찾게 되는 추가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 자신을 홍보해서는 안되겠지만, 빈첸시오회의의 활동은 공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빈첸시오회의의 활동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이 빈첸시오회에 가입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3.20 총이사회 재무관의 역할 (The Treasurer General: Functions)

총이사회 재무관은 총회장의 권한 아래에서 총이사회 재정을 관리한다. 총이사회 재무관은 회계를 기록하며 이 기록은 1년에 한 번 이상 총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재정위원회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독립 기관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한다.

총이사회 재무관은 총이사회 재무관 대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해설 - 모든 조직에서 회계의 투명성이 필수 불가결하나 빈첸시오회에서는 회계의 투명성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 총이사회부터 가장 작은 협의회 조직에 이르기까지 회계는 중대한 책임감으로 정확히 처리되어야 한다. 자금 규모가 크다면 총이사회를 위한 조항에 따라 (상급, 통합 혹은 연합이사회 내부규칙의 기본요건 제21조와 해설 참조) 외부 감사인에 의해 심사되어야 한다.

3.21 총이사회 예산 (The Budget of the Council General)

총이사회 재무관은 총이사회 운영 예산을 확정한다. 수입과 지출 항목은 총이사회 회의 제출에 앞서 집행임원회(Governing Board)의 권한으로 개최된 상임집행부(Permanent Sec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총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는 국제집행위원회가 예산 승인을 담당한다.

해설 - 정기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총이사회 재무관과 함께 집행임원회에 보고한다.

3.21.1 수입 (Income)

총이사회 일반 예산 중 수입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한다.

- 상급, 통합, 연합이사회 분담금
- 이사회 회의 비밀헌금
- 특별 기부금 또는 임의 기부금
- 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관에서 받은 모든 형태의 보조금
- 각 협의회가 총이사회와의 연대의 표시로 거두는 매년 4/4분기 헌금
- 기타

해설 - 협의회와 이사회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국제조직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무는 회원들 사이에 큰 기쁨과 애덕의 마음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총이사회는 전세계 모든 상급이사회 수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상급이사회들의 관대한 지원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나 교육, 빈첸시오회가 취약한 국가를 돕는 일 등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회원들의 개인적인 기부 역시 큰 도움이 된다. 회원들은 총이사회 책임을 함께 하고 있음을 언제나 상기할 것이며 자신들의 기부가 세계 도처의 협의회와 이사회를 돕게 됨을 깨닫고 전 세계의 단일한 협의회(one unique Conference)에 속하였다는 점을 진정으로 느끼게 된다. (다음의 지출 항목을

참조한다.)

각 국가에서 개인적 기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규칙을 채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 관행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회원당 최소 기부금액 등을 의무화 하는 방식 등으로 말이다. 어떠한 경우든 부유한 국가들은 그들보다 더 가난한 나라의 회원들로부터의 기여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관대하여야 한다.

3.21.2 지출 항목 (Expenses)

주요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각국에서 빈첸시오회의 발전과 확장 및 지원을 위하여 제공되는 지출
- 사무국과 총이사회 간행물 발간비
- 국제조직을 위한 지출
- 최소 필요한 여행 경비 관련 지출

해설 - 3.21.1 해설에서 지적했듯이, 모든 회원들은 이 조항에 명시된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우리가 협의회 회원으로서 많은 은총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 역시 가난한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총이사회는 최소 경비만을 지출하고 건축재정 속에서도 언제나 훌륭한 봉사를 제공하려 한다. 그러나 분명히 재정 부족은 빈첸시오회를 새로운 나라로 확장하고 새로운 협의회를 창설하려는 우리의 활동을 제약한다. 세계 도처의 가난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는 회원들에게 이 점은 큰 염려 사항이 될 것이다.

3.21.3 특별 예산 및 기타 기금 (Extraordinary Budgets, Global or Special Funds and Others)

일반 예산외에 기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금은 긴급 사태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상황에서 여러 이사회, 협의회, 국가, 지역을 지원할 쓰일 용도로 조성되며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된다.

해설 - 협의회가 세계 널리 퍼져 있으므로 총이사회는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유연하게 집행한다. 예를 들어 자연 재해나 전쟁 또는 모든 종류의 고통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회원들과 협의회는 총이사회에 기금을 보내 특정 문제나 일반적 문제 해결을 위해 쓰이도록 할 수 있다. 총이사회는 모아진 기금을 지원이 필요한 협의회나 특별사업부에 보내고, 이를 공표한다.

3.22 그 외의 국제조직 구성원

(The Remaining International Service Structure)

총이사회는 빈첸시오회 회원들 가운데서 지역부회장과 지역조정관을 임명한다.

3.22.1 심사 (Enquiries)

총회장은 국제조직의 일원들을 임명하기 전에 항상 그 임명에 의해 영향을 받을 나라와 협의한다.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조정관이나 지역부회장 등의 국제조직 구성원 임명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가 가운데, 해당 지명을 과반수로 찬성하지 않은 국가들은 총이사회 총회장에게 그러한 결정을 알린다. 이 경우 총회장은 임명을 철회하고 가능한 빨리 다른 조정관이나 지역부회장 등을 지명한다.

해설 - 총회장이 고위 임원들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총회장이 국제조직 구성원을 임명할 권한을 갖게 된다. 총회장은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과 빈첸시오 성인의 정신으로 하나되어 친구처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 임원을 임명할 경우 그에 대한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더라도 다른 회원들과 협의를 거쳐 그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본 조항은 총회장에게 국제조직 임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총회장이 임원들과 함께 일할 수 없을 상황 발생시에 그러한 문제가 신속하고도 조화롭게 해결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3.23 지역부회장 (Territorial Vice-Presidents)

지역부회장은 총회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도처에서의 빈첸시오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권고하며, 보호, 지원, 조정한다.

3.23.1 지역회의 (Regional Meetings)

지역부회장은 총회장의 허가 아래 관할 지역에서 지역회의를 조직한다.

해설 - 빈첸시오회의의 유익한 전통을 담은 이 조항은 가깝게 일해야 할 회원들끼리 서로 모여 협력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의 장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이 조항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적용된다.

3.24 조정관 (The Coordinators)

조정관은 지역부회장의 감독과 홍보 업무에 있어 해당 업무를 보고하고 보좌하며, 특정 국가들에 대한 특별 사무를 위임받는다.

지역부회장은 상급, 통합, 연합이사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언제나 존중하며, 단결과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사회를 돕는다.

해설 - 지역부회장과 조정관은 상급, 통합, 연합이사회가 각기 고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면서 활동을 보좌한다. 그러나 지역부회장과 조정관이 실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빈첸시오회의의 관행이므로, 지역부회장과 조정관의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는 지역부회장과 조정관의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회의 및 다른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생성된 우정은 영감의 원천이며, 유용한 모범사례를

제1부 빈첸시오의 소명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과 기회들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문제 해결을 돕게 된다.

총회장은 조정관의 지명을 통해 모든 핵심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이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3.35 국제 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s)

특정한 경우에 총회장은 다른 회원에게 위원회를 주재할 권한을 맡기거나,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3.25.1 국제 위원회 구성원

(Th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s)

총회장은 각 위원회 회장들의 요청에 따라 각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지명한다.

해설 - 정관은 이 조항을 통해 총회장의 임무를 돕고자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추천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총회장이 한다.

3.26 개인적 책무 (Individual Responsibilities)

총이사회 회장은 많은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은 임무의 경우에 개인 회원들에게 해당 임무를 직접 위임할 수 있다.

해설 - 이 조항 역시 총회장의 임무를 돕고자 한다. 총회장이 추천인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3.27 국제적 임무를 맡은 회원

(Members with International Missions)

가난한 사람들과 동료 회원들을 위해 중요한 국제적 사무를 맡은 모든 회원은 그들이 속한 협의회의 임무와 위임된 특정 임무를 동시에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해설 - 총이사회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본당 협의회에 소속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아름다운 관행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풀뿌리(grassroots)' 단위로 협의회 활동을 지속하며 국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총이사회 회장 역시 소속본당 협의회 회장의 권위를 기꺼이 수용한다는 겸양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 조항이 상급, 통합, 연합 이사회의 내부규칙에 포함되도록 한다.

3.28 임기종료(The End of Terms of Office)

원활한 직무 이양을 위해서 총이사회 회장에 의해 위임된 모든 임기와 직위와 사무는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때로부터 6개월 후에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새로운 총회장은 이 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제1부 빈첸시안의 소명

해설 - 이 조항은 빈첸시오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핵심 임원직이 일정기간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총회장에게 사태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팀을 구성할 시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면 총회장의 임기 완료와 동시에 다른 모든 임명인들의 임기 또한 종료한다.

4. 국제집행위원회

THE INTERNATIONAL EXECUTIVE COMMITTEE

4.1 위원회의 임무 (The Mission of the Committee)

연맹의 국제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총이사회의 정기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빈첸시오회의 국제 전략을 조율하고 동 전략이 총회 회기 중 승인된 사항들과 일치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총이사회 회장이 맡고 있는 모든 협의회와 이사회의 총괄업무를 보좌하고 권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빈첸시오회 활동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이전에 이행된 활동 중 수정되어야 한다고 총이사회 회장이 판단하는 사항과 다음 연도의 활동에 대해서 검토한다.

해설 - 국제집행위원회는 연례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민주적인 기관으로 빈첸시오회 활동 결정에 대해 최고 권한을 갖는 총회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국제집행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구성원은 빈첸시오회 회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그들을 대표하는 회장들이다. (4.3 참조) 모든 상급 또는 통합이사회는 의제설정(4.5.1 의제 참조)을 위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례는 미래 전략에 관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구성원들에게 참관인(4.4 참조)에 우선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례는 민주주의 정신의 존중에 입각하며, 빈첸시오회의 모든 단계의 이사회에 대하여 권고하는 바이다.) 총이사회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하는 동안 총이사회 회장은 국제집행위원회를 주재할 수 있고 혹은 총이사회 부회장, 또는 국제집행위원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그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 모든 공식적인 결정 회의는 총이사회 회장 또는 총이사회 부회장이 주관한다.

4.1.1 연맹의 정기회의로서의 국제집행위원회의 임무 (The Mission of the Committee as an Ordinary Assembly of the Confederation)

국제집행위원회는 총이사회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비영리단체에 관한 프랑스 법률에 따라 연맹의 회의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 총회는 일반적으로 6년마다 소집되므로(2.2 참조) 매년 국제집행위원회가 연맹의 국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 한다.

4.2 총회 보고서 제출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국제집행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은 동안 관리 집행한 활동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총회의 회기가 시작할 때 사무총장을 통해 제출하고 이러한 활동의 추인을 요청해야 한다.

해설 - 총회는 연맹의 최고 기관으로 비회기 기간 중 국제집행위원회가 이행한 임무에 대한 승인 또는 유보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제집행위원회는 총회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릴 지에 대해 미리 주의를 기울인다.

4.3 상임위원과 법정위원 (Permanent and Legal Members)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주관할 책임을 지닌 총이사회 회장 외에, 총이사회 부회장, 사무총장과 총이사회 재 무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상임 위원은 동 정관 3.18에 명시된 총부회장 대리를 상임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제집행위원회의 법정위원은 해당 관할지역에서 현재 활동하고 등록된 1,000개 이상의 협의회를 지닌 상급, 통합이사회의 회장들이다.

또한 총회장은 다른 상임위원과 법정위원의 제청으로 1,000개 미만의 협의회를 포함하는 상급 또는 통합이사회 출신의 위원을 5명 임명해야 한다. 총회장이 임명한 5명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법정위원인 상급 또는 통합이사회의 회장은 각각 한 표의 표결권을 행사한다. 총이사회 회장도 마찬가지로 한 표를 행사하며, 상황에 따라 총이사회 회장의 투표는 결정권(casting vote)으로 간주된다.

해설 - 국제집행위원회의 위원 중 각 대륙 출신 위원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단의 "상황에 따라"는 찬부 동수인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이미 행사한 회장의 투표는 최종결과를 결정한다.

4.3.1 정족수와 투표 (Quorum and Voting)

국제집행위원회가 유효한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의 30% 이상이 참석하거나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 2차 투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24시간 이후에 실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 2차 투표는 의사 정족수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실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결 정족수는 단순 과반수이다.

해설 - 정관에서 더 높은 의결 정족수를 요구한 경우(3.13 참조)를 제외한 모든 사안은 단순 과반수의 승인만을 필요로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4.4 참관인 (Guest Participants)

지역부회장, 기존 국제 위원회의 회장들, 국제적 성격의 개인적 임무를 총회장으로부터 특별히 위임 받은 회원들은 위원회 회의에 언제나 참석할 수 있으며, 발언권은 가지나 표결권은 없다.

국제 영적지도자 또한 영적 지도를 이유로 위원회 회의에 초청받는다.

4.4.1 특별초청(SpecialInvitations)

빈첸시오회의 국제조직 내에서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관리하고 이행한 업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위원회 회의 참석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이 참석요구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승인에 관련한 조사를 직접 실시해야 한다.

해설 - 빈첸시오회 내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구체적인 결정을 할 때 다양한 의견과 희망을 고려하면 빈첸시오회의 우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좀 더 용이해질 것이며, 국제집행위원회 위원들의 고충은 더 많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4.5 특별보고서 (Special Reports)

총이사회 부회장 대리, 사무총장, 총이사회 재무관, 지역부회장과 총이사회 회장으로 부터 위원회의 업무 혹은 특별임무를 위임 받은 위원들은 이행한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5.1 사무총장의 보고서 (The Secretary General's Report)

사무총장은 위원회 서기의 직무도 이행하며, 상임집행부 운영과 연맹 총이사회 사무소의 관리상황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서기는 정관 4.7에 명시된 특별회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국제집행위원회 회기 2개월 전에 모든 상급, 통합 이사회로부터 회의의 의제 중 포함되거나 배제될 사안을 확인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법정위원이 아니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급, 통합 및 연합 이사회의 의견은 상기 이사회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보고서나 견해를 반영하여 사무총장이 대변한다.

해설 - 국제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회라도 의제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사안과 그 외 모든 사안에 관한 견해와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보고서와 견해를 적절하게 존중하게 된다. 이는 총회가 매년 소집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빈첸시오회의 우호적 정신을 유지하고 민주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4.5.2 총이사회 재무관의 보고 (The Treasurer General's Report)

총이사회 재무관은 정관 3.20에 명시된 재정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재정위원회를

제1부 빈첸시오회의 소명

대신하는 자격으로 개최된 본 위원회에 회계 관리 및 운영성과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총이사회 재무관은 예산을 확정하고 정관 3.21에 명시된 사안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4.6 연락관과 조정관 (Correspondents and Coordinators)

위원회는 상기 조항에 언급된 책임을 지닌 모든 회원들에 더해, 연락관 혹은 조정관을 소환하여 그들의 업무시행이나 업무 관련 사안에 관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해설 - 조정관이나 빈첸시오회의 다른 고위 간부들의 미래 전략은 협의를 거쳐 국제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각 조정관은 국제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될 수 있고 초청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국제조직의 일원으로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본 위원회가 소집된 날에 이어 개최되는 국제조직의 본회기에는 참석해야 한다. (4.7.1 참조)

4.7 위원회와 국제조직 회의

(Committee and International Structure Meetings)

위원회는 총이사회 총회가 개최되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 상반기에 한 번 이상 소집된다.

특별회의는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고려하고, 표결권이 있는 위원의 과반수가 소집을 요청할 때 소집된다.

해설 - 이는 민주적 장치이다. 총회가 법정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이 가능하듯이 국제집행위원회 회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2.2.1 참조)

4.7.1 국제조직 회의 (Service Structure Meetings)

모든 국제조직은 총이사회 총회가 개최되는 해를 제외하고 매 2년마다 국제집행위원회가 소집된 날짜 이후에 본회기 (Plenary Session)를 통해 회의를 갖는다.

해설 - 4.1.1의 해설을 참조한다.

4.7.1.1 참가자 (Participants)

국제적 임무를 위임받은 모든 빈첸시오회 회원들과 국제조직의 구성원들은 이 회의에 참석한다.

해설 - “국제적 임무”: 국제적 수준의 특정 사업이나 임무를 지정 받은 것을 의미한다. (1.10.3, 3.6 참조)

4.7.1.2 목적 (Objectives)

제1부 빈첸시오회의 소명

이 회의의 목적은 연맹의 국제조직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을 나누게 하기 위함이다. 회기 동안 국제집행위원회의 위원들은 국제조직의 어려움을 깨닫고, 국제조직은 국제집행위원회가 세우는 국제 전략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회의는 국제조직을 위한 교육(training) 및 정보 제공으로 주로 구성 된다.

해설 - “국제조직의 어려움”: 이 광범위한 표현은 의제에 관해 미리 협의하는 것이 불필요함을 시사한다. 모든 관련 사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4.8 기도과 묵상 (Prayer and Meditation)

빈첸시오회의 전통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기도로써 시작하고 기도로써 마친다. 참석자 중의 한 사람이나 또는 더욱 일반적으로 국제 영적지도자에 의해 진행될 영적독서와 묵상이 있는 후에는 간단한 나눔을 할 수도 있다. 참석자들은 비밀헌금을 한다.

해설 - 매회마다 이런 방식으로 빈첸시오회의 영성을 되새긴다. 모든 업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겸양과 기쁨의 정신으로 행해진다. 빈첸시오회의 모든 회의는 언제나 이러한 협의회 회합의 특징을 잘 반영해야 한다.

5. 상임집행부/ 집행임원회

THE PERMANENT SECTION/ GOVERNING BOARD

5.1 본부와 회의 소집 (Head Office and Convening of Meetings)

상임집행부는 총이사회의 본부에 설립된다. 상임집행부는 총이사회 회장에 의해 주재되고 총이사회 회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소집될 수 있다.

5.1.1 상임집행부의 임무 (The Mission of the Permanent Section)

상임집행부의 임무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활동을 면밀히 관리하고 감독하여 총이사회 회장이 회원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더 나은 국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상임집행부는 회칙과 정관 및 빈첸시오회 전통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린다. 또한 총이사회 회의를 통해 채택된 결의와 국제집행위원회의 권고를 따른다.

상임집행부는 특히 지난 총이사회 회의 혹은 국제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의 이행사항을 감독하고 상급, 통합, 혹은 연합이사회와 총이사회 자체에서 결의의 이행정도 또한 감독한다.

5.1.2 연맹의 집행임원회로서 상임집행부 (The Mission of the Permanent Section as the Governing Board of the Confederation)

상임집행부는 1년에 한 번 이상, 프랑스법이 지정한 비영리 단체의 집행임원회(Governing Board)로서

제1부 빈첸시오회의 소명

수행해야 할 역할 이행을 책임져야 한다.

상임집행부는 상기 프랑스법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임집행부가 연맹의 집행임원회로서 개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특수의제 하에서 소집된다.

해설 - 상임집행부와 총이사회는 국제조직에서 가장 오래된 두 기관이다. 두 기관의 권한은 빈첸시오회의의 일상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5.2 상임집행부 위원 (Permanent Section Members)

총이사회는 임원과 지역부회장, 연락관은 그들이 담당하는 임무로 인해 상임집행부의 위원이 된다.

5.2.1 표결 (Voting)

상임집행부가 연맹의 집행임원회로서 소집할 때를 제외하고 정관 5.1.2에 따라 상임집행부 회기에 참석한 모든 상급, 통합, 연합이사회 회장들은 이 기관의 정식 위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진다.

해설 - 상임집행부의 결정이 총회나 국제집행위원회 혹은 집행임원회를 통해 빈첸시오회의에 법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권리나 의무를 제약하지 않는 경우, 연합이사회 (1.6.2에서 명시한 대로 자국에서 적합한 비영리 기구로 성립되지 않은 이사회) 회장은 상임집행부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5.3 지역기술연락관 (Territorial Technical Liaison Officers)

지역기술연락관들은 상황이 허락할 때마다 채용된 전문가들이며, 우선적으로 다른 지역 출신을 채용한다. 총회장에 의해 임무를 위임 받아 연임 가능한 일정 기간 동안 일한다. 그들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5.3.1 지역기술연락관의 임무

(The Mission of the Territorial Technical Liaison Officers)

각 연락관은 정관 1.3.1에 따라 설립된 각 총이사회 사무처에서 임명된다. 연락관은 임명된 지역의 지역부회장과 조정관을 보좌한다.

담당 관할영역 유무에 관계없이 일부 지역기술연락관들은 때로 사무총장이나 총이사회 회장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해야 할 특별 임무를 위임받기도 한다.

해설 - 지역기술연락관은 대체로 피고용인으로서, 그들의 역할은 빈첸시오회의의 국제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지역기술연락관은 세계도처의 가장 적절한 사무처에 지정된다.

제1부 빈첸시오회의 소명

5.3.2 배제 (Exclusion)

정관 5.1.2에 명시된 것처럼 상임집행부가 연맹의 집행임원회로 소집될 때는 지역기술연락관은 상임집행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 이 조항은 빈첸시오회를 위해 일하는 고위 간부들이 모두 자발적인 봉사자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빈첸시오회와 협의회와 자원봉사적 성격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을 분명히 한다.

5.4 연락관 및 기타 (Correspondent Members and Others)

전통적으로 지역연락관으로 명명되는 연락관은 총회장에 의해 임명되어 일정 기간 연임가능하며, 특정 업무가 위임된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상임집행부의 일원을 구성한다.

해설 - 총이사회 본부는 빈첸시오회 창립때부터 세계 도처의 협의회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지원 제공 여부를 확인해왔다. 빈첸시오회 창립초기에는 본부에서 일하는 연락관들이 모두 파리 시민이었지만 현재 유럽의 다른 지역이나 세계의 각국에서 온 연락관들도 함께 일하고 있다.

“일정 기간 연임가능하며” – 3.16의 해설을 참조한다.

5.4.1 지역연락관의 임무

(The Mission of the Territorial Correspondents)

지역연락관에게 부가된 임무는 다른 지역기술연락관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효과적인 협력 도모 및 보고서 제출이다. 지역연락관은 상급, 통합, 연합이사회의 사무를 할당받으며, 국제조직에서 상급, 통합, 연합 이사회의 친밀하고 우호적인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해설 - 지역연락관의 임무는 총이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모든 협의회와 이사회에 골고루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5.5 상임 객원 (Permanent Guests)

총이사회 본부를 방문한 상급 혹은 통합이사회의 회장들은 상임집행부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언제나 초청된다.

해설 - 이 조항은 정관 5.2.1과 비슷하다. 상임집행부의 책무를 함께 나누기 위해 자격 있는 회원들과 총이사회의 회원들에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다.

5.6 상임집행부의 서기(The Secretary of the Permanent Section)

정관 3.19에 명기된 대로, 사무총장은 상임집행부의 서기도 함께 맡는다.

6 인준 및 해산

INSTITUTION, AGGREGATION AND DISSOLUTION

6.1 인준 권한 (Aggregation and Institution Powers)

오로지 총이사회만이 해당 상급, 통합, 혹은 연합 이사회와 협의 후, 새로운 이사회와 새로운 협의회를 인준할 권한을 가진다.

해설 - 협의회와 이사회가 입회에 따른 법적 지위를 정식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총이사회의 공식적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인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에 소속된다고 할 수 있다.

6.2 인준 제청 및 의장 (Aggregation and Institution Proposals/ Speaker)

협의회와 이사회는 인준을 총이사회 회장에 의해 임명된 의장에 의해 상임집행부 회의에서 제청된다. 의장은 총회장을 대표해서 해당 협의회와 이사회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 상급, 통합, 혹은 연합 이사회에 요청과 권고를 접수하며, 인준을 요청한 이사회를 담당하는 상임집행부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의장은 인준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상임집행부의 견해도 밝힌다.

해설 - 총이사회 회장에 의해 지명된 의장이 빈첸시오회 초기부터 협의회와 이사회에 인준을 제청한다.

6.2.1 협의회 인준의 제청과 시한 (Deadline for Presenting and Requesting the Aggregation of Conferences)

의장에 의해 제청되는 인준 요청 대상인 협의회는 반드시 이미 창설되어 있어야 하고, 적어도 12개월 이상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해설 - 12개월 동안의 적극적 활동은 인준의 필요성을 입증해줄 만큼 충분한 안정과 인내의 지표가 된다.

6.2.2 인준 지위의 유지 (Preservation of Aggregated or Instituted Status)

협의회나 이사회가 인준을 받으면 총이사회 회장이 임시 활동중지(6.8 참조)를 명하거나,

제1부 빈첸시오의 소명

모든 협의회와 이사회에 의해 완전 배제되지 않는 한, 그 지위를 유지한다.

해설 -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총이사회 회장은 상임집행부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협의회나 이사회가 일정기간 동안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특정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실질적 활동이 정지된 경우, 협의회나 이사회 지위 인준의 자동적인 소멸을 규정하는 상급, 통합, 연합 이사회의 내부규칙에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상기 경우에 해당 상급이사회는 상임집행부에게 해당 협의회 혹은 이사회의 인준지위 상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인준은 취소될 것이고 빈첸시오회의의 고유한 성격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6.3 특수 상황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상임집행부는 협의회와 이사회의 인준을 제정하는 의장을 통해, 국제 지역부회장에게 보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 이 보고서는 상임집행부에게 충분한 공식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6.4 정보교류 (Communication)

상임집행부가 공표한 인준 사항은 이해관계가 있는 상급, 통합 혹은 연합 이사회와 소속 회원들에게 공지된다.

6.4.1 인준 증명서 (Aggregation and Institution Letters)

총이사회 회장과 사무총장은 인준 증명서에 반드시 서명하고 상급, 통합 혹은 연합 이사회 회장의 서명 공간을 비워둔다. 의장은 여러 사유로 인해 거부된 인준 요청도 공지한다.

해설 - 거부 사유는 상급, 통합, 혹은 연합 이사회 회장에게 공지된다.

6.5 상급이사회의 인준 및 임시임원회의의 지명 (The Institution of a Superior Council/ Appointment of a Provisional Board)

총이사회가 상임집행부를 통해 상급이사회를 인준하면, 총이사회 회장은 임시임원회를 지명한다. 임시임원회의의 임기는 1년이며 2회에 한해 갱신될 수 있다. 임시임원회의의 회장은 1.10.2에 규정된 것처럼 총이사회의 임시회원이 된다.

해설 - 이 조항은 빈첸시오회의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상급이사회의 부재로 인해 동일 지역 내에서 협의회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상호 조율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상호 협의회간의 접촉을 쉽게 하기 위해 총회장은 임시임원회라는 적절한 특수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시임원회의의 활동은 최대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6.6 임시임원회의의 임무 (Missions of the Provision Board)

임시임원회는 새로 설립되는 해당 빈첸시오회의의 내부규칙을 작성하고 채택하며, 신생 빈첸시오회의가 1.6의 규정을 따라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국제 연맹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절차들을 밟아야 한다.

총이사회는 상임집행부를 통해 제출된 신생 빈첸시오회의의 내부규칙 및 통합 혹은 연합 이사회의 내부규칙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승인된 내부규칙에 따라 회원들은 해당 상급 이사회의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총이사회에 통고한다.

해설 - 본 정관은 임시임원회에 몇 가지 의무를 위임함으로써, 임시임원회가 임시적 조정 업무를 넘어 연맹에의 진정한 소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6.7 협의회와 이사회 인준의 취소 또는 정지 (The Dissolution or Suspension of the Aggregation or Institution of a Conference or Council)

총이사회 회장은 특정 사태의 심각성을 이유로 상임집행부에 통지한 후 협의회나 이사회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영구적으로 제명시킬 수 있다. 영구적 제명은 인준의 자동적인 취소를 의미한다. (6.9항과 후속 조항 참조)

해설 - 이러한 결정은 특정 사태에만 유보되어 있다. 빈첸시오회처럼 수많은 협의회와 이사회를 갖춘 기관은 다른 협의회와 이사회 및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하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져야 한다. (6.9.1 및 6.9.2의 요건 참조)

만약 상급, 통합, 혹은 연합이사회 자체가 정지되었다면 총회장이 총이사회 임원회와 협의하여 (3.16 참조) 국제집행위원회나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8 특수 위임 (Extraordinary Delegation)

각 상급 혹은 통합이사회의 회장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총이사회로부터 협의회, 이사회, 혹은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다. 이 권한은 총회장의 긴급명령권(prerogative)이다. 다시 말해 매우 심각하거나 급한 상황일 때 상급 혹은 통합이사회 회장은 해당 관할지역내의 협의회, 이사회 혹은 회원의 활동을 예방조치의 일환으로써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 이 권한의 위임으로 인해, 긴급 사태 발생시 회장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빈첸시오회와 빈첸시오회 활동을 보호할 수 있다. 정지명령이 유효한 동안, 사태를 조사하거나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다. 활동이 정지된 회원, 협의회, 이사회의 입장을 청취하고, 회장단이 올바른 방법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상급, 통합 혹은 연합이사회 내부규칙의 기본 요건 제15조 참조)

6.8.1 정보교류 (Communication)

상기 진술한 사태 발생시, 총이사사회장은 해당 결정과 해당 사유를 15 근무일(15 working days) 내에 통지 받아야 한다. (6.9.1.1 참조)

문제의 회원, 협의회 및 이사회는 활동정지 명령을 내린 상기 회장에게 진술권을 요청할 수 있다. 총회장은 이 요청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해설 - 이 조항의 목적은 활동정지와 같은 성질의 결정이 침해할 수 있는 회원, 협의회 및 이사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일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총회장에게 이러한 사태의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된다.

6.9 해산 혹은 정지 절차의 개시 (Commencement of Dissolution or Suspension Procedures)

해산, 정지, 인준 절차로부터의 철회는 다음 두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6.9.1 상급, 통합, 혹은 연합 이사회로부터의 요청 (On the Request from the Superior, Assimilated or Associated Council)

해당 상급, 통합, 혹은 연합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문제되는 회원, 협의회 혹은 이사회에 대한 절차가 개시된다.

6.9.1.1 필요한 문건 (Necessary Documentation)

상급이사회가 어떤 사태에 총이사회의 개입을 요청할 때, 상급이사회는 총이사회 회장이 알기 쉽도록 모든 문서, 특히 상급, 통합, 혹은 연합 이사회의 조정위원회 개입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문건을 반드시 함께 보내야 한다.

6.9.2 직권 (Ex Officio)

총이사회 회장은 심각한 사태에 있어서 발의 또는 국제지역부회장 1인 이상의 요청으로 정지나 퇴출 과정을 개시한다. 총회장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상임집행부에 보고해야 한다.

해설 - 본 정관은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6.10 결정의 집행 (Execution of the Decision)

문제되는 협의회나 이사회를 감독하는 상급, 통합 및 연합이사회는 총이사회의 동의하에 제재를 시행하고 해당 협의회나 이사회의 재산과 문서의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할 책임을 진다. 상급, 통합, 혹은 연합이사회의 정지 또는 해산의 경우에는 총이사회 회장이 6.5항을

따라 임시임원회를 임명한다.

6.11 특수 절차 (Extraordinary Procedures)

총이사회는 상급, 통합, 연합 이사회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해 협의회와 이사회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총이사회는 빈첸시오회의 정신과, 상임집행부에 의해 승인되고 비준된 해당 이사회의 내부규칙의 조항들을 고려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한다.

6.11.1 민사 법정 (Civil and Other Tribunals)

총이사회는 명시적 허가를 받지 않고 회원간, 협의회간 혹은 이사회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상 혹은 다른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회원, 협의회 혹은 이사회는 그 나름의 소송 제기 목적과 의도를 불문하고 자동적으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에서 퇴출된다.

해설 - 빈첸시오회의 문제에 대한 소송제기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이 조항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빈첸시오회의 정신과 맞지 않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총이사회는 명시적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그에 따르는 불가피한 결과도 진술하고 있다. 빈첸시오회의 거의 모든 문제는 '조직 내에서(within the family)' 해결될 수 있다. 빈첸시오회의 고유한 조직 또는 상급이사회에 의해 설치되는 조정위원회(상급, 통합 혹은 연합 이사회 내부규칙의 기본 요건 제17조 참조)를 이용하면 된다. 주님의 사업을 하는 빈첸시오회는 내부 분열의 공공연한 공표에 의해 크게 손상을 입을 것이다. 빈첸시오회의 회원들이 주님의 사도처럼 보일 때, 활동에서도 성공한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5)

그러나 이 조항은 형사상 위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 또는 형사상 다른 위법 행위의 경우에 빈첸시오회는 언제나 국가 기관과 협력할 것이다. 상급이사회 회장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위법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유용한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빈첸시오회의 명성에 대한 손상이 최소한으로 줄어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문제가 빈첸시오회를 전국적으로 언급하게 되는 문제라면 총회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7. 회칙과 정관의 개정과 해석

(AMENDMENTS TO AND INTERPRETATION OF THE RULE AND THE STATUTES)

7.1 회칙과 정관의 개정 절차 (Rule and Statutes Reform Procedures)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칙과 정관은 다음 두 절차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7.1.1 전면 개정 (General Reform)

첫째로 일반적으로 회칙과 정관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7.1.2 부분 개정, 수정 (Partial Reforms, Amendments)

둘째로 소위 “수정” 절차이다. 이 절차를 통해 여러 개의 수정 조항이 회칙과 정관 조문 끝에 첨가되어 교정되고 보충되거나 교체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해설 - 모든 회원, 협의회 및 이사회는 회칙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빈첸시오회의 조직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상급, 통합 혹은 연합이사회가 개정 조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제안의 타당성은 높아질 것이다. 많은 경험을 지닌 회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보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7.2 회칙과 정관 개정 기간과 방법 (Rule and Statutes Reform Periods and Methods)

회칙과 정관의 개정 또는 특정 조문의 수정이라는 두 절차 모두의 경우, 개정 조문안은 이 문제가 논의될 총회 개최 예정일 1년 전에 제출해야 한다.

해설 - 회칙과 정관의 변화는 급하게 결정되지 말아야 하고, 충분한 연구와 숙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관은 전면적 개정 혹은 부분적 개정을 위한 시간 일정(timescale)을 정해두고 있다.

7.3 정족수 (Quorum)

개정 또는 수정이 유효하려면, 우편 투표를 합쳐 참석하거나 의사를 표명한 총이사회 법정 구성원의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 본 조항은 7.2의 해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중함을 요구한다. 개정이 일반 과반수보다 더 높은 정족수에 의해 수락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7.4 회칙의 해석 (Interpretation of the Rule)

회칙과 정관의 어느 부분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규율되지 않는 사안은 빈첸시오회의 전통 또는 총이사회 임원회의 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규율한다.

해설 - 이 조항은 빈첸시오회에 때때로 제기될 수 있는 해석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방법을 제공한다. 임원들은 빈첸시오회의 정신과 전통과 일치하는 조문 해석을 위해 필요한 경험을 갖고 있다.

총회(1.5 참조)와 국제집행위원회(4.1)는 임원회의 해석을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7.5 해석에 대한 일반 규칙 (General Rules governing Interpretation)

회칙과 정관이 세 부분(part)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하나의 동일한 법률 문서로 간주되어야 하며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회칙(Rule of the Society of Saint Vincent de Paul)”이라 불리는 첫째 부분은 다른 두 부분에 우선한다.

마찬가지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의 국제 연맹 규정(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the Society of Saint Vincent de Paul)”은 회칙에는 종속되나 내부규칙에는 우선한다.

각 상급 이사회 고유의 내부규칙도 있다. 이 내부규칙 제정을 위해서 “상급, 통합, 연합 이사회 내부규칙의 기본 요건(Basic Requirements for the Drafting of the Internal Statutes of the Superior, Assimilated or Associated Councils)”이 있다.

내부규칙은 각 상급, 통합, 및 연합 이사회에 의해 준비되며 전적으로 회칙과 국제정관에 합치되고 종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관 1.7에 명시되었듯이 이러한 조문들은 단 하나의 법적 문서로 취급된다. 조문이 유효하기 위해서 총이사회의 상임집행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제3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정관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승인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정관

한국이사회, 교구이사회, 지역이사회, 협의회 및 이에 소속된 모든 빈첸시오회 회원들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칙, 국제연맹 정관 및 한국이사회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이사회 정관은 협의회 및 각급 이사회와 빈첸시오회 회원의 역할에 대한 규범이며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조 직

1. 회원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원은 활동회원, 협조회원,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진다.

1.1 활동회원

활동회원은 협의회 참석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방문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가톨릭 신자로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칙, 국제연맹 정관, 한국이사회 정관을 준수하고,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회원을 말한다.

1.2 협조회원

협조회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으나 자선활동을 할 때 회에 도움을 제공한다. 협조회원은 축일행사와 회의 특별한 기념일 행사에 초대된다. 협조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1.3 후원회원

후원회원은 물질적으로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후원을 정기적으로 행하여 빈첸시오회를 돕는 회원이다.

1.4 입회 절차

활동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협의회 회장에게 입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협의회 회장은 활동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명세를 협의회에 공지해야 한다. 신상에 대한 협의회 회원들의 확인 결과 이의가 없을 경우 입회 신청자는 협의회 회합에 참관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 빈첸시오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 및 영성과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칙, 국제연맹 정관, 한국이사회 정관 등에 대한 교육과 양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활동회원 자격을 부여하기 전에 협의회 회장이나 영적 조연자는 회원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해 입회 신청자와 면담을 해야 한다. 협의회는 선서에 의해 입회 신청자를 활동회원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

2. 입회 및 갱신식

새로운 회원의 입회는 협의회 활동을 최소 6개월 이상 한 후 가능하다. 입회 및 갱신은 협의회 전례 예식이나 축일 행사에서 실시한다.

모든 회원들은 소명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회원들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서약을 매년 갱신해야 한다.

3. 협의회

빈첸시오회 회원들이 모인 단체를 협의회라고 한다.

3.1 회합

회합은 매주 회합을 원칙으로 하되, 적어도 2주에 1번씩(기본요건 제1조) 회원들이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해야 한다.

3.2 회원의 영성

정기적인 회합은 영성의 중요함과 협의회 공동체 특성을 강화시켜 준다. 믿음, 사랑, 기도와 실천의 단체로서 빈첸시오들은 가난한 이들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상호협력 및 우정 안에서 회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3.3 협의회 설립

협의회는 본당, 병원, 학교, 직장, 교정기관, 외국인 노동자 혹은 사회단체 안에서 설립될 수 있다.

3.4 방문

가난한 이들과 만날 때는 두 사람이 짝을 지어 방문한다.
누군가를 도울 때 필요한 사정을 알게 될 때까지 여러 번 방문을 할 때도 있다.

4. 인준 및 설립

모든 협의회 및 이사회는 세계총이사회에 의해 인준과 설립이 되었을 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국제연맹의 정회원이 된다. 협의회는 적어도 1년 이상 활동을 하여 연간 활동 및 재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준받을 수 있다.

4.1 인준 및 설립 신청

인준을 받고자 하는 협의회와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사회는 한국이사회가 정한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한국이사회는 세계총이사회의 적절한 규범을 따라야 한다.

4.2 협의회 활동 정지 또는 중단 시 기금 관리

협의회, 지역이사회, 교구이사회가 활동을 일시 정지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는 서류 및 기금을 차상위 이사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5. 협의회 회합 시 필수 사항들

협의회 회합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시작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시작기도 (성령께 드리는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 영적 독서, 묵상 혹은 회원들의 신앙 나눔
- 전차 회의록 승인
- 회계 보고
- 회장의 보고
- 방문 및 다른 활동, 적어도 반드시 필요한 활동 보고
(각 활동항목별 총 방문 횟수를 기록)
- 토의를 거친 후, 회장이 방문이나 필요한 업무 할당
- 서신 보고
- 빈첸시오회 소식 및 간단한 교육 (선택사항)
- 비밀헌금
- 마침기도 (프레드릭 오자남의 시성을 청하는 기도, 고통 받는 사람들과 은인들을 위한 기도, 성모송, 영광송)

5.1 회합의 의무

모든 협의회 회원들은 주 회합에 참석해야 한다. 회합은 사전에 잘 준비되어 안건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회장은 회합이 너무 길어지거나 안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5.2 영적 독서와 나눔

영적 독서로는 성경, 빈첸시오회 교본, 준주성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영적 독서 후 나눔을 할 때,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지식이 많은 회원이 먼저 나눔을 하여 다른 회원들의 나눔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5.3 영적 조언자의 훈화

회장은 회합 때마다 영적 조언자를 초청하여 회합의 마지막 순서 때에 훈화 말씀을 듣도록 한다.

6. 방문활동

회원들은 빈첸시안 정신으로 가난한 이들을 방문해야 하며, 가난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야 한다. 가난한 이들과 만날 때는 언제나 우정, 존경,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어려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보여야 한다.

7. 축일행사 및 협의회 전례예식

해당 지역 이사회 회원들을 모두 초대하는 축일 행사를 1년에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축일 행사에는 전례예식을 포함해야 하며 아래 기념일, 혹은 기념일 전후에 개최하도록 한다.

-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의 탄생: 4월 23일
- 복자 프레드릭 오자남의 축일: 9월 9일
- 빈첸시오 성인의 축일: 9월 27일
- 빈첸시오회의 수호자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 대축일: 12월 8일

7.1 축일행사의 기도지향

축일행사의 전례예식에서 교회, 교황님, 주교님, 빈첸시오회,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지향을 한다.

7.2 빈첸시안 공동체 행사

축일행사는 회원들 간의 우정, 활동 경험 및 사례의 공유, 협의회 및 회원들 간의 상호지원 등을 촉진시키며,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전 세계 빈첸시안 가족의 일원임을 강조한다.

7.3 협의회 전례예식

협의회 전 회원, 회원들의 배우자 및 자녀, 은인들을 위한 협의회 미사를 1년에 1번 이상 봉헌한다. 미사 중에 신입회원의 입회, 회원들이 방문한 사람들, 은인들, 어려운 이웃들, 돌아가신 회원들을 위한 기도와 빈첸시오회의 자선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한다.

8. 한국이사회

한국이사회는 대한민국의 빈첸시오회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적어도 1년에 1번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한국 빈첸시오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8.1 한국이사회 설립

한국이사회 설립은 세계총이사회가 승인한다.

8.2 한국이사회 구성

한국이사회는 교구이사회 회장, 한국이사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및 청년대표로 구성한다.

단, 한국이사회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는 한국이사회에서 발언권은 가지되 표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8.3 한국이사회 책임

한국이사회는 한국 내의 빈첸시오 활동과 관련하여 모든 교구이사회, 지역이사회 및 협의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며 그들의 모든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한다.

8.4 한국이사회 집행위원회

한국이사회 회장 및 한국이사회 회장이 임명한 임원으로 구성된다.

8.5 한국이사회 집행위원회의 임무

한국이사회 집행위원회는 한국이사회 정기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한국 빈첸시오회의 전략을 조율하고 동 전략이 총회 회기 중 승인된 사안들과 일치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한국이사회 집행위원회는 한국이사회 회장이 맡고 있는 모든 협의회와 교구이사회 총괄업무를 보좌하고 권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빈첸시오회 활동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검토하고 활동 중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차기연도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심의한다.

8.6 청년위원회

한국이사회 내에 청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는 교구이사회와 동급 이사회가 아니라 한국이사회 산하 특별 위원회이다.

협의회는 각급 이사회 아래에 가능한 가장 단순한 형태로 구성한다. 병렬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해당 이사회는 환경에 맞는 청년이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청년위원회를 담당하는 이사회는 해당 이사회에 속한 다른 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의 관계를 청년위원회와 갖는다.

8.7 청년 빈첸시오의 활성화

각급 이사회는 청년들이 협의회에 입회하도록 격려하여 청년협의회 및 청장년협의회를 육성시켜 그들이 빈첸시오 생활 속으로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 및 청장년협의회는 해당 이사회 소속 협의회이다.

8.8 교구 및 지역(대리구, 지구)이사회 활동

교구 이사회 및 지역(대리구, 지구) 이사회는 그들이 담당하는 이사회 및 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한다.

8.9 이사회 설립

한국이사회는 각급 이사회 창설을 승인하고 관할 지역을 정한다. 다만 교구이사회는 해당 교구, 한국이사회는 주교회의에 보고하고 별도의 지침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칙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명칭 및 활동지역을 표시해서 구분해야 한다. 한국이사회는 교구이사회가 제출하는 협의회 인준 및 이사회 설립신청서의 인준을 받도록 세계총이사회에 전달해야 한다.

8.10 한국이사회 법률적 대표성

한국이사회는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빈첸시오회의 모든 법적인 사건에 대하여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에 책임을 지는 유일한 기구이다.

8.11 이사회 회합

각급 이사회는 상급 이사회와 합의하여 회합을 정례적으로 가진다. 지역이사회는 관할 내의 모든 협의회를 지원한다. 지역이사회는 피정, 교육 등을 주선하고 회원들 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단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활동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지역이사회는 새로운 협의회를 설립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기존 협의회를 지원하여 협의회 회원들이 가난한 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게 하며 지역사회에 빈첸시오회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8.12 이사회 회의 참석

지역이사회 회장이 회의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지역이사회 다른 회원이 대신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대리자는 지역이사회 회장의 책임과 의무를 대리한다.

관리 및 경영

9. 섬기는 리더십

빈첸시오회 모든 지도자는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마르 10,45)라고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직책을 그리스도, 가난한 이 및 회원들을 위한 봉사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0. 임원의 협의회 활동 의무

빈첸시오회 모든 임원은 협의회에 속하여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둘 수 있다.

10.1 회장 선거

협의회 및 이사회의 회장 선거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칙 및 국제연맹 정관과 일치하는 한국이사회가 정한 선거 규정에 의거하여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10.2 선거 관리

수석 부회장은 모든 회원들 중에서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출 과정 초기부터 성령께 간구하는 기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업무의 인수인계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10.3 연령 제한

이사회 회장은 선출 시 65세 이하여야 한다.

10.4 임기

협의회 및 지역이사회 회장, 한국이사회 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을 한 경우, 3년이 지날 때까지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최대 연임기간은 총 6년이다.

10.5 회장의 임무

회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 안에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칙, 국제연맹 정관 및 한국이사회 정관의 정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임무가 있다.

회장은 협의회 혹은 이사회가 속해 있는 상급 이사회의 회원이며 회의 및 기타 활동에 참석해야 한다.

회장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회칙 3, 6항에서 언급된 활동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먼 지역까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장은 한국이사회 정관 7조에 의거하여 축일행사가 개최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 회장은 해당 지역 내의 협의회 및 이사회를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방문하여 가난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격려한다.

10.6 협의회 및 이사회 임원 구성

각 협의회 및 이사회는 회장의 부재 시 회장직을 대행할 부회장 1명과 서기 및 회계를 회원들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부회장, 서기 및 회계로 임원진이 구성되며, 회장은 다른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원진은 회장을 보좌하거나 이사회 및 협의회를 위한 업무 준비를 위해 모임을 가진다.

이사회 회장은 해당 이사회와 협의하여 이사회 회원 중 경험이 풍부하거나 능력 있는 회원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권이 있는 회원의 수가 투표권이 없는 임명직 인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임명된 임원은 새 회장이 선출되면 임기가 종료된다.

이사회 회장의 친척은 협의회나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임명될 수 없다.

신임회장은 전임회장과 활동했던 임원을 재임명하여 함께 활동할 수 있다.

11. 빈첸시오회 직원

빈첸시오회 지도자들은 직원들이 협의회 회원이 되어 적절한 빈첸시오안 양성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빈첸시오회의 직원, 혹은 빈첸시오회가 운영하는 특별사업이나 단체의 직원은 빈첸시오회 내의 어떠한 임원직도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협의회라면 협의회 회원과 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정규직이든 봉사직이든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특별한 성격의 업무나 중요 업무를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의존하지 않는다.

12. 영적 조언자

빈첸시오회는 초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과 회칙에 부응하면서 협의회 및 이사회 내에서 영성적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영적 조언자를 추대해야 한다.

사제, 부제, 혹은 수도원 서원자 등 서품자가 영적 조언자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 혹은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과 상급 이사회 회장과 협의 후 영적 조언자의 양성 및 교육과 동등한 훈련을 받은 평신도를 영적 조언자로 추대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이사회는 서품 혹은 서원받은 영적 조언자를 추대할 때 주교회의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사제, 부제, 수도원 서원자들은 영적 조언자의 역할을 넘어서 빈첸시오회의 어떠한 임원직에도 임명될 수 없다.

13. 담당사제

교구이사회 담당사제는 해당교구 주교가 임명하며 한국이사회 담당사제는 교구이사회 담당사제 중에서 선출한다. 선출 결과는 주교회의에 보고한다.

담당사제가 영적 조언자를 겸할 수 있다.

14. 보조성과 민주주의 원칙

빈첸시오회는 업무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보조성의 원칙 및 민주적인 합의의 원칙을 수용한다.

가톨릭교회의 교리는 보조성의 원칙을 이렇게 정의한다.: “상위층의 사회는 하위층 사회의 내적 사안에 간섭하여 그 고유의 임무를 제거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선을 목표로 그 행동이 하위층 사회의 행동과 조화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3항 참조).

빈첸시오회에서 협의회 및 이사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활동할 때 자치성을 지니나 협의회나 이사회는 모든 결정사항들이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칙, 국제연맹 정관, 한국이사회 정관 및 한국이사회가 제정한 제반 규칙과 절차에 의거해야 한다.

빈첸시오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의 결정은 다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회원들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다.

각급 이사회 회의에서 정족수는 투표권자의 과반수로 한다.

각급 이사회에서 임명된 임원보다 선출된 임원이 더 많아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선출된

회장들이 투표를 하고 모든 결정사항에서 그들의 의견이 우세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15. 회원, 협의회, 이사회의 직무정지

국제연맹 정관 6.8항에 따라 한국이사회 회장은 긴급조치로서 한국 내 회원, 협의회, 이사회의 직무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한국이사회 회장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 해당 회원, 협의회, 이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즉시 직무를 중지하여야 하며, 빈첸시오회의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단, 세계이사회 회장에게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

직무 정지된 회원은 사안을 검토해 주도록 한국이사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한국이사회는 총회를 열어 해당 회원의 청원을 청취하고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해당 회원이 이 절차를 택할 경우, 세계이사회 회장에게 올린 청원은 잠정 중단된다.

16. 회장 선출 무효

한국이사회 회장은 이사회 회원들과 협의를 거쳐 협의회 혹은 이사회 회장 선출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은 바로 직무 수행을 그만 중단해야 한다. 해당 회원은 이에 대해 한국이사회에 청원할 수 있다.

17. 회장의 제명

약물, 신체적, 정신적, 시간 관리, 섬기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포용 정신의 부족, 회장직 수행의 자격 미달과 같은 많은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들이 협의회 및 이사회 활동 수행능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고 상급 이사회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사임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이사회 회장은 이사회 협의를 거쳐 빈첸시오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해당 회장을 회장직에서 제명할 수 있다.

18. 조정위원회

한국이사회는 이사회, 협의회, 회원들이 청원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사회, 협의회, 회원들은 빈첸시오회의 신실함과 기도생활, 통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부 문제를 외부 단체 또는 법률 기관에 제기하지 않는다.

빈첸시오회가 제시한 내부 문제의 해결안 이외의 수단을 추구할 경우, 해당 이사회, 협의회, 회원은 빈첸시오회 회원으로서의 통공을 거부한 것이므로 빈첸시오회를 떠나야 한다.

투명성

19. 협의회 및 이사회 연례 활동 보고

적어도 연 1회 각 협의회 및 이사회는 회원들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 및 특별사업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새로운 형태의 어려움을 식별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내며 가난한 이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연례 보고의 좋은 시기는 연례 보고서가 준비된 직후가 좋다.

각 협의회 및 이사회는 항상 정확한 활동 및 회계를 기록해야 하며, 모든 회원들과 상급 이사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20. 연례 회계 및 활동 보고서

한국이사회를 포함하여 각급 이사회는 연례 활동 보고서와 외부 감사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구이사회는 해당 교구 주교 및 한국이사회로, 한국이사회는 주교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교구이사회는 해당 교구, 한국이사회는 주교회의에 보고하고 별도의 지침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칙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협의회는 연례 회계 및 활동 보고서를 해당 지역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계 보고서는 협의회 혹은 이사회 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 및 활동 보고서는 주보, 회보 등을 통하여 모든 회원에 공개되어야 한다.

교구이사회는 회계 및 다른 활동사항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은 연례 보고서를 한국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구이사회는 해당 지역 내 협의회의 회계, 특별사업 및 회원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한국이사회에 발송해야 한다. 활동보고서에는 가정방문 횟수, 기관방문 횟수, 도움을 받은 세대수, 회합수, 축일행사 및 특별사업, 자매결연, 양성 및 교육, 피정 참가 횟수, 신입회원 및 떠난 회원수가 표시되어야 한다.

한국이사회 회장은 연례 감사 이외에 협의회 이사회 및 특별사업에 대한 감사를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 비용 지출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위임받은 2명의 회원이 공동 서명을 한다.

21. 수입

본회는 다음 수입으로 운영한다.

1. 분담금: 각 교구이사회에 할당된 분담금
2. 사업비: 본회가 추진하기로 결의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총당되는 수입
3. 찬조비: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이 자발적으로 찬조하는 수입
4. 기타 수입: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

21.1 자산 및 기금의 분배

협의회 및 이사회는 열의를 다하여 회의 운영을 하고 자산을 유지한다. 빈첸시오회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한국이사회에 있으며 민법에 따라 해당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빈첸시오회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자산을 한국이사회로부터 서면으로 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이외는 임대차할 수 없다.

21.2 특별사업

빈첸시오회의 특별사업이 속해 있는 이사회 회장은 한국이사회와 논의하고 법률적 결과의 평가를 고려한 후에 그 특별사업의 임원진 및 직원을 직무에 상관없이 교체할 수 있다.

22.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3. 회비(분담금) 책정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4. 재정 감사

감사는 연 1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 서신 열람권

각급 이사회 회장은 빈첸시오회의 대표성을 위임받아 협의회가 보내온 모든 서신을 열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신 열람권은 상급 이사회가 관할하는 하급 이사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6. 기금의 분배

부를 축적하지 않는 정신을 지켜 한국이사회는 이사회 및 협의회와 함께 잉여기금액의 평가를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축적할 수 없는 기금의 분배를 결정한다. 잉여기금은 당해연도 예외적인 항목 및 차기연도의 특별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모금 및 조직 유지

협의회는 빈첸시오회 모든 단계의 조직들을 유지하고 한국 및 전 세계의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협의회는 수입의 1%나 일정액을 한국이사회가 정한 모금액으로 기부해야 한다. 기부 및 기금 마련 등은 적절한 계정을 마련하여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가난한 국가나 세계이사회 조직 및 세계총이사회의 사업을 위한 특별모금은 매년 4분기에 실시하도록 한다.

28. 기금의 사용

빈첸시오회의 기금은 빈첸시오회의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유를 막론하고 한국이사회가 빈첸시오회 가족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 단체라고 인정한 기관 이외에 여타의 기관이나 자선단체에 빈첸시오회 기금이 증여, 기부, 모금, 청약금 등의 형태로 분산되지 않아야 한다. 재무 담당은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다.

29. 비용의 상환

빈첸시오회의 공인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적절한 영수증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상환받는다. 비용 지출은 빈첸시오회의 목적과 정신, 기금을 마련해 준 회원들의 의향을 반영하는 최소 금액이어야 한다.

30. 한국이사회 정관의 개정

한국이사회 정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국이사회 법정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단체의 해산과 재산의 청산

31. 단체의 해산

본회의 해산은 한국이사회 법정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해산이 확정되면 세계총이사회 및 주교회의에 보고한다.

32. 재산의 청산

단체의 해산이 결정되면, 잔액 재산 처리는 총회 결의에 따른다.

부 칙

1.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회칙, 국제연맹 정관, 교회법규 규정과 본회 결의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본회 정관은 주교회의의 인준 및 세계총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07년 11월 14일, 총이사회 상임국 승인
- 2019년 10월 15일,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승인

※ 한국이사회 내부규칙은 2019. 7. 20. 한국이사회 정관으로 일부 수정 및 명칭 변경을 하였다(한국이사회 임시총회 의결: 2019. 7.20.).